

등 록 번 호

지침서-0179-

2020년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점검표

명칭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공무원 지침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이미 등록된 지침서·안내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침서·안내서가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_____)	
	<input type="checkbox"/>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년 이내 한시적 적용 또는 일회성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서·안내서 구분	<input type="checkbox"/>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지침서)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input type="checkbox"/> 예(☞안내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기타 확인 사항	<input type="checkbox"/>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p> <p>2019 년 12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담당자 확 인(부서장)</p>		

이 지침서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식약처 및 지자체 내 관련 부서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본 지침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지침서는 2019년 12월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 지침서"란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임(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지침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담배관리TF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1741

팩스번호: 043-719-1710

목 차

I. 위생용품 안전관리 목표 및 주요 추진내용

- 1. '20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목표 1
- 2. 추진내용 1

II.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체계

- 1. 위생용품의 종류 및 유형 3
- 2. 법 시행 전·후 안전관리체계 비교 7
- 3. 위생용품 관리법 역할 분담 체계 9
- 4.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행정통합시스템) 활용 10

III. 위생용품의 사전 안전관리

- 1. 영업의 신고 14
- 2. 영업의 승계 18
- 3. 휴업·폐업 및 재개업 20
- 4. 영업신고의 변경신고 22
- 5. 품목제조보고 23
- 6. 위생용품 위탁제조·처리업체 관리 26
- 7.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관리 28
- 8. 위생용품 제조·처리 실적보고 34
- 9. 위생용품의 표시관리 36
- 10.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44

IV.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1. 효율적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구축	47
1-1. 행락철 나들이 성수품목 제조업소 관리	51
1-2. 전국합동단속	52
1-3. 하절기 다소비품목 제조업소 관리	54
1-4. 위생용품수입업소 관리	55
1-5. 다빈도 위반업소 중점점검	56
2. 위생용품 영업소 지도·점검	58
3. 위생용품의 수거·검사	71
4. 위생용품의 허위·과대광고 관리	74
5. 부정·불량 위생용품 관리	77
6. 위생용품 민원관리	79
7. 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 제고	81

V.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

1. 수입 위생용품 검사	87
2. 수입 위생용품 신속통관 제도	96
3. 부적합 수입 위생용품 관리	98
4.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 사후관리	99

VI. 부 록

[별표 1]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100
[별표 2] 헹굼보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112
[별표 3]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116
[별표 4] 위생용품 담당부서 현황	119

제·개정 이력

연번	제·개정 번호	승인 일자	주요 내용
1	지침서-0179-01	2018.4.13.	제정
2	지침서-0179-02	2018.12.27.	개정

1. '20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목표

국민이 안심하는 위생용품 안전 환경 조성

2. 추진내용

가. 위생용품의 범위 확대

관리주체	기존		변경
	복지부 (구 공중위생법)	산업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18. 4. 19.~)
위생용품 범위	✓(구)위생용품(9종) • 세척제 • 행굼보조제 • 위생물수건 • 기타위생용품(6종) - 일회용 물컵·손가락·젓가락·이쑤시개,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안전관리대상제품(3종) • 화장지 • 일회용 면봉 • 일회용 기저귀	✓위생용품(19종) • 세척제 • 행굼보조제 • 위생물수건 • 기타위생용품(16종) - 일회용 컵·손가락·젓가락·이쑤시개,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 - 일회용 포크·ナイ프·빨대, 일회용 행주·타월 -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 제외) - 물티슈용 마른 티슈 - 문신용 염료('20.1.1.~)
	※ 식품용 기구(3종) • 일회용 포크·ナイ프·빨대	※ 비관리 제품(4종) • 일회용 행주 • 일회용 타월 • 일회용 팬티라이너 • 물티슈용 마른 티슈	

나. 안전한 위생용품 제조·처리·수입·유통체계 확립

1) 분산된 관리주체를 일원화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식약처·지자체로 분산된 관리주체를 식약처로 일원화

2)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가) 위생용품수입업 신설

※ 영업의 종류: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나) 수입위생용품 무작위 표본검사 시행(2018. 10. 19.~)

3) 위생용품 사전관리 강화

가) 화학물질 노출우려 위생용품의 품목제조보고 의무화

※ 5개 품목(세척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 일회용 팬티라이너)

나) 품목별 자가품질검사 주기 적용

(1) 위생물수건(매월 1회 이상, 중금속항목 6월마다 1회 이상)

(2) 품목제조보고대상 제품(3월마다 1회 이상)

(3) 기타(6월마다 1회 이상)

다) 수입단계 안전관리(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의무)

※ 수입단계 안전성 검사가 없었던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행주·타월 등의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의무 부여

4) 신속한 사후조치 기반 마련

가) 생산실적보고 의무화

나) 부적합 제품 품목제조정지

다) 원료수불부, 생산작업일지, 거래내역(판매내역) 등 기록관리 의무화

※ 제조업, 처리업 : 작성일로부터 3년, 수입업 : 작성일로부터 2년

5) 기타

가) 법 위반사실의 공표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

나)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위촉으로 모니터링 강화

다)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 제시 의무 부여

1. 위생용품의 종류 및 유형

가.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및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적용범위

나. 정의

- 1) 세척제 : 야채, 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 (가) 1종 세척제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나) 2종 세척제 :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 기구(자동식기세척기 포함)·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다) 3종 세척제 :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2) 행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굼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 3) 위생물수건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 제품
- 4) 기타 위생용품
 - (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포크·ナイ프·빨대·컵 : 식품과 접촉하는 것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 (나) 일회용 종이냅킨 : 사용자의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 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의 종이냅킨(각테일용 냅킨 포함)

- (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라) 일회용 이쑤시개 :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쑤시개(단, 식품용 기구는 제외)
- (마) 일회용 면봉 :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면봉(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 (1) 성인용 면봉
- 어린이용 면봉 이외의 일회용 면봉
- (2) 어린이용 면봉
-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면봉
- (바) 일회용 기저귀 :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기저귀 [위생깔개(매트)를 포함]
- (1) 성인용 기저귀
- 성인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입거나 입히는 형), 테이프형(점착 테이프 및 기계접착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형), 일자형으로 구분
- (2) 어린이용 기저귀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 테이프형, 일자형, 기저귀라이너(천기저귀 및 일회용 기저귀 등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천기저귀 또는 일회용 기저귀 등에 덧대어 사용하는 것)로 구분
- (3)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 기저귀 등의 보조수단으로써,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사람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
- (4) 어린이용 위생깔개(매트)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

(사) 화장지 : 화장실용 화장지 또는 미용 화장지(단,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행주 등), **클렌징 티슈 등

(1) 화장실용 화장지

- 화장실에서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화장지

(2) 미용 화장지

- 일상생활에서 얼굴 등에 사용되는 화장지를 말한다.

(아) 일회용 행주 : 주방에서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최초 사용 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회 사용 후 폐기하는 제품 포함)으로서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건조 제품

(자) 일회용 타월 : 식품의 유·수분 등을 닦아내거나 손의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타월

(1) 키친타월

- 식품과 접촉되어 사용되는 타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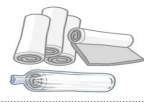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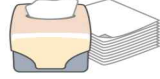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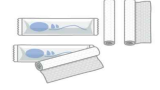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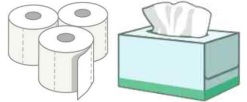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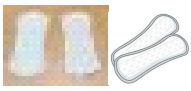

(2) 핸드타월

- 화장실 등에서 손의 물기 제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세용 타월

(차) 일회용 팬티라이너 : 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제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

(카) 물티슈용 마른 티슈 :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표 1] 위생용품의 종류

(구)법에 따른 분류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종류	관련제품 사진
분류	(구)소관법률		
위생용품	공중위생법 (복지부)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안전관리 대상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어린이제품법 (산업부)	화장지	
		일회용 면봉 (어린이용,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성인용)	
식품용 기구	식품위생법 (식약처)	일회용 포크·ナイ프	
		일회용 빨대	
비관리 품목	-	일회용 행주·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대통령령) 물티슈용	
		마른 티슈 (대통령령)	

2. 법 시행 전 · 후 안전관리체계 비교

	시행 전('18.4.19이전) (구 공중위생법)		시행 후('18.4.19이후) (위생용품 관리법)
관리주체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위생용품 범위	✓(구)위생용품(9종) • 세척제 • 행굼보조제 • 위생물수건 • 기타위생용품(6종) - 1회용 물컵·술가락·젓가락· 이쭉시게, 종이냅킨, 식품접 객업소용 물티슈 ※ 식품용 기구(3종) • 1회용 포크·ナイ프·빨대	✓안전관리대상제품(3종) • 화장지 • 일회용 면봉 • 일회용 거저귀 ※ 비관리 제품(4종) • 일회용 행주 • 일회용 타월 • 일회용 팬티라이너 • 물티슈용 마른 티슈	✓위생용품(19종) • 세척제 • 행굼보조제 • 위생물수건 • 기타위생용품(16종) - 일회용 컵·술가락·젓가락· 이쭉시게, 종이냅킨, 식품 접객업소용 물티슈 - 화장지, 일회용 면봉·거저귀 - 일회용 포크·ナイ프·빨대, 일회용 행주·타월 -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 품 제외) - 물티슈용 마른 티슈 - 문신용 염료(2020.1.~)
영업종류 및 시설기준	✓영업의 종류(2종) • 위생용품제조업 • 위생처리업 ✓시설기준 • 설비 기계·기구류 <u>일괄규정</u> * 기본기계·기구 목록 지정 • 작업장, 급수시설, <u>화장실</u> 기타시설	<없 음>	✓영업의 종류(3종) • 위생용품제조업 • 위생용품수입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시설기준 • 설비 기계·기구류 <u>자율규정</u> * 기본기계·기구 목록 <u>삭제</u> • <u>화장실 설비 삭제</u> * 작업장, 급수시설 창고 등 시설 검사실(위탁 시 제외)
품목제조 보고등	<없 음>	<없 음> * 출고 전 안전 확인 신고(거저귀)	✓ 품목제조보고 • 원료·성분명 및 제조방 법설명서 등 보고 * 세척제, 행굼보조제, 일회용 거저귀·팬티라이너, 물티슈 ✓ 생산실적보고 • 품목별 연간 생산실적 및 위생처리 실적 보고
수입 신고	✓방문신고 * 신고관청 분산(일부 지방식약청, 국립검역소) ✓수입검사	<없 음> * 최초 통관전 안전 확인 신고(거저귀)	✓전산신고 * 신고관청 <u>일원화</u> (6개 지방식약청) ✓수입검사 • 서류·현장·정밀

	시행 전('18.4.19이전) (구 공중위생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시행 후('18.4.19이후) (위생용품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현장·정밀 * 정밀검사 주기(1년) <p>✓ 신고수수료(42,3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검사 주기(5년) • 무작위표본검사 (시행: 2018.10.19.~) <p>✓ 검사수수료(신설) * 수입신고수수료 42,300원 폐지</p> <p>✓ 재검사 제도(신설)</p>
기준규격	<p>✓ 복지부 고시(2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 	<p>✓ 산업부 고시(5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기저귀) * 공급자적합성생활용품의 안전기준(면봉, 화장지) * 어린이제품공동안전기준(어린이저귀, 어린이 면봉)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어린이저귀) *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어린이 면봉) 	<p>✓ 식약처 고시(1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p>✓ 원재료·함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척제, 헹굼보조제 <p>✓ 업체명</p> <p>✓ 제품명</p> <p>✓ 제조연월일, 중량</p>	<p>✓ 주 재료명</p> <p>✓ 제조(수입)자명</p> <p>✓ 모델명</p> <p>✓ 제조연월, 포장단위</p> <p>✓ KC 마크 표시</p>	<p>✓ 원료 또는 성분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명은 품목제조보고대상 제품 <p>✓ 업체명</p> <p>✓ 제품명</p> <p>✓ 제조연월일, 내용량</p> <p>✓ '위생용품' 글자 표시</p>
자가품질 검사 등	<p>✓ 매월 2회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월 2회 이상 • 위생처리업 월 1회 이상 	<p><없 음></p>	<p>✓ 품목별 차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물수건 1회이상/월 • 품목제조보고대상 1회이상/6월 • 그외 1회이상/6월
위생 감시원	<p>✓ 공중위생감시원</p>	<p><없 음></p>	<p>✓ 위생용품위생감시원</p> <p>✓ 소비자위생감시원(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인 중 위촉
벌칙 등	<p>✓ (벌칙)1년, 500만원이하</p> <p>✓ (행정처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명령, 영업정지·폐쇄 • 폐기처분 <p>✓ (과태료)100만원이하</p>	<p>✓ (벌칙)3년, 3000만원이하</p> <p>✓ (행정처분)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명령, 영업정지·폐쇄 • 폐기처분 <p>✓ (과태료)1000만원이하</p>	<p>✓ (벌칙)1년, 1000만원이하</p> <p>✓ (행정처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영업정지·폐쇄 • 폐기처분 • 품목제조정지 <p>✓ (과태료)100만원이하</p>

3. 위생용품 관리법 역할 분담 체계

구 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본부	지방청	시·도	시·군·구
국내유통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기준 등 총괄 ▶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정기합동단속 계획 수립 ▶ 위생감시원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합동단속 실시 ▶ 수입위생용품 유통 단계 모니터링 ▶ 소비자위생감시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위생관리 등 지도·점검 ▶ 정기합동단속참여 ▶ 소비자위생감시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위생물수건 처리업 영업신고 품목제조보고 등 관리 ▶ 기초 위생관리 등 지도·점검 참여 ▶ 정기합동단속참여 ▶ 유통제품 수거·검사 ▶ 소비자위생감시원 운영
수입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검사 조정·관리 총괄 ▶ 수입검사 공무원 전문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업 영업신고 등 관리 ▶ 수입신고·검사 등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교육총괄 ▶ 위생교육기관 지정 ▶ 공무원 대상 교육 ▶ 소비자 등 대상 정책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영업자 등 대상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영업자 등 대상 교육·홍보 	
기준·규격 등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규격 설정·운영 및 재평가 등 ▶ 표시기준 설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 모니터링 실태조사 ▶ 제품 표시실태 조사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식품의약품안전처(평가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법 개발 및 위해성 평가 ▶ 안전성 모니터링 ▶ 화학물질 원료성분 검토·평가 	
전산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수입신고, 지도·점검, 수거·검사, 행정처분, 품목제조보고 등 안전관리 전산 시스템 개발 			

4.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행정통합시스템) 활용

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개요 (위생용품)

- 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따라 위생용품 행정정보의 통합 관리 기능을 개발하고 새올행정정보시스템·통합수입검사시스템과 관련 정보 등을 연계하여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
- 2) (시스템 구성) 위생용품 행정관리시스템과 대국민 정보제공시스템으로 구성

시스템명	주요기능	사용자
①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행정관리시스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인허가·사후관리·행정처분 정보 등 통합 공유	식약처 지자체
②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정보제공시스템)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공유 및 대국민(위생용품업체) 맞춤정보 제공	국민 위생용품업체

※ 표준코드를 기반으로 2개의 시스템 및 개별 정보 연계·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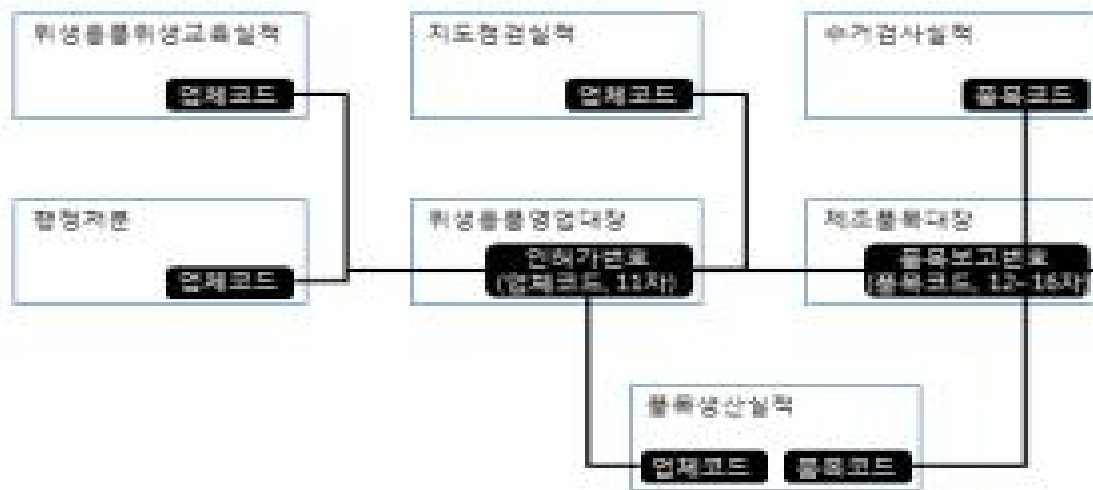
나.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기능 (위생용품)

- 1) 식약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위생용품 행정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 위생용품행정 업무처리 시스템

구분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식품안전나라
기능 분류	식약처 소관 업무 처리기능	식약처·지자체 공통업무 관리 기능	전국단위 통합 위생용품정보 조회 기능
제공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업 인허가 등 식약처 민원처리 기능 ■원재료 코드 등 기준정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 사후 관리 등 공통 행정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영업·품목대장, 수입위생용품 정보, 점검·수거, 행정처분 등 통합DB

다.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특성(위생용품)

- 1) (실시간 전송)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입력한 인허가·단속·수검 검사·행정처분 등 실적과 식약처 실적을 실시간 연계하여 전국 DB 구현
- 2) (정보 상호연결) 영업·품목 인허가대장, 업체점검, 수거검사, 행정 처분, 생산실적, 위생교육 등 일체의 위생용품행정 정보가 업체·품목코드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도록 기능 설계·구축



3) (표준코드 활용)

- 가) 전국 위생용품업체와 모든 제조위생용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업체·품목 관리의 실효성 제고
 - 나) 위생용품 원재료에 코드를 마련하여 사용가능 원료 여부를 품목 보고(신고) 단계부터 확인
 - 다) 위생용품유형, 법령조항, 시험항목, 처분기준, 행정처분 유형 등을 코드화하여 정보 관리의 효율성 제고
- 4) (종합정보 제공) 위생용품업체와 제조위생용품을 중심으로 모든 안전 관리 이력을 종합적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라.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정보의 활용 (위생용품)

‘통합 업체대장 조회’ 또는 ‘통합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조회’ 등에서 업체 또는 제품에 관한 종합 정보를 조회·확인하여 업체 또는 제품의 안전 관리에 활용

☞ 예시: 개별 업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줄 요약정보’로 조회·다운로드 가능
 인허가 번호·일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사항, 보고(운영)품목의 수, 위생용품유형별 품목수, 최근3년간 지도점검 횟수, 최근지도점검일, 최근3년 처분내용, 사업장면적, 생산실적합계금액, 급수시설, 자기품질검사방법, 최근2년 위생교육실적, 수입실적 등

※ (접속경로) 식품행정통합시스템.→통합식품행정 정보조회→업체 조회→통합 업체대장 조회 또는 통합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조회

마.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및 접속경로

1) 기관별 위생용품 행정관리시스템

기관	업무시스템	주요 단위업무
시·도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통합사후관리(지도점검, 수거검사), 통합식품행정정보조회, 품목조회
시·군·구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통합사후관리(지도점검, 수거검사), 통합식품행정정보조회, 품목조회, 생산실적보고·위생교육·감시원
	서울행정시스템	인허가(제조업, 물수건처리업), 행정처분, 지도점검, 수거검사, 품목제조보고 등 * 생산실적보고 및 품목제조보고를 방문(팩스)등으로 서울행정시스템에서 처리한 경우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으로 연계 전송됨

2) 단위업무별 행정관리시스템 접속경로

단위업무	접속경로
인허가(수입업)	행정업무처리[식약처] > 위생용품 > 민원관리
행정처분 관리	행정업무처리[공통] > 통합사후관리 > 행정처분관리
지도점검 관리	행정업무처리[공통] > 통합사후관리 > 지도점검관리
수거검사 관리	행정업무처리[공통] > 통합사후관리 > 수거검사관리
품목제조보고 관리	행정업무처리[공통] > 품목조회 > 품목조회
(소비자)위생용품 위생감시원 관리	행정업무처리[공통] > 생산실적보고,위생교육,감시원 > 감시원관리
생산실적보고 관리	행정업무처리[공통] > 생산실적보고,위생교육,감시원 > 생산실적관리
위생교육 관리	행정업무처리[공통] > 생산실적보고,위생교육,감시원 > 위생교육관리
기준정보 관리	행정업무처리[공통] > 기준정보 조회 > 기준정보조회

※ 단위업무별 행정관리시스템 사용방법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통합게시판의 “자료실”에 게시된 「‘18년도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참조

1. 영업의 신고

가.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1)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2) 신고기관(처리기한) : 시·군·구(3일)

3) 구비서류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참조

가)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나) 위생교육 수료증(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위생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등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다)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영업신고 관련 확인사항

가)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대장을 통해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

나) 신고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

다) 신고관청은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

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영업신고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

5) 영업신고의 제한

-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함)로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6) 행정지원

신고관청은 영업신고나 지위승계신고 시 수리 후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생교육기관에 통보

나. 위생용품수입업

1)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2) 신고기관(처리기한)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지방식약청’ 이라 한다) (3일)

3) 구비서류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참조

가)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나)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

다) 위생교육 수료증(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위생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등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 위생용품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에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증만 첨부

4) 영업신고 관련 확인사항

가)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대장을 통해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확인)

- 나) 신고관청(지방식약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
- 다) 신고관청은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
- 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영업신고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

5) 영업신고의 제한

-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함)로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6) 행정지원

신고관청은 영업신고나 지위승계신고 시 수리 후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생교육기관에 통보

다. 영업신고증 재발급

1) 근거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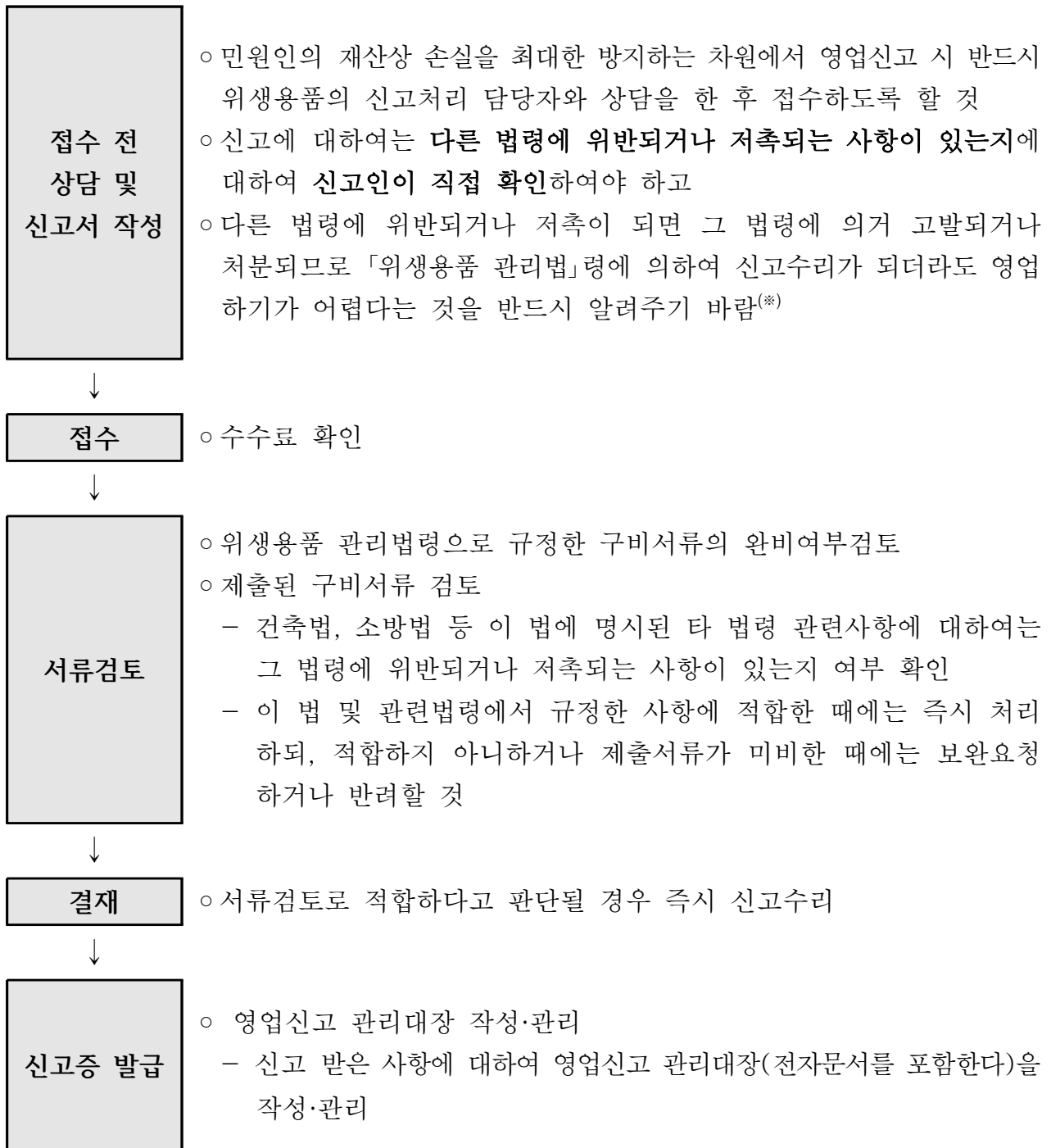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2) 신고기관(처리기한) : 지방식약청 및 시·군·구(즉시)

3) 구비서류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참조

- 가)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나) 헐어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 한함)

<표 2> 영업신고 절차 및 검토사항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 여부를 검토하도록 적극 홍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영업의 승계

가.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나. 지위승계 대상

- 1)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4)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5) 그 밖에 상기 2)~4)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 2)~4)의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신고는 그 효력을 잃음

다. 신고기관(처리기한) : 지방식약청 또는 시·군·구 (3일)

라. 구비서류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참조

-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2) 영업신고증
- 3)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가)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나)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위생교육 수료증(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위생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등 사전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마. 확인사항

- 1)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식약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함
- 2)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제외)를 첨부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함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함께 적어 신고할 수 있음

3. 휴업·폐업 및 재개업

가.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나. 신고기관(처리기한) : 지방식약청 또는 시·군·구(즉시)

다. 구비서류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참조

- 1) 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2) 영업신고증

라. 확인사항

- 1) 신고관청은 폐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영업신고관리대장에, 휴업 또는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영업신고관리대장 및 해당 영업신고증에 각각 그 내용을 적어야함
- 2)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음
- 3)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신고서 제출 불필요
- 4) 지방식약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 5) 지방식약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식약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음

- 6)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하여야 함
- 7)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

마.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약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신고 관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함

4. 영업신고의 변경신고

가.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나. 변경신고 대상

-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3) 영업소의 소재지
- 4) 영업장의 면적

다. 처리기관(처리기한) : 지방식약청 또는 시·군·구(3일)

라. 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가) 영업신고증 1부
 -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 가) 영업신고증 1부
 -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마. 신고사항의 변경 관련 확인 사항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

5. 품목제조보고

가.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5조

나. 대상 업종 및 보고기관 등

1) 대상 업종 : 위생용품제조업

2) 대상품목

가) 세척제

나) 행굼보조제

다) 일회용기저귀

라) 일회용팬티라이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

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3) 보고기관: 시·군·구

4) 보고기한: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

※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위생용품을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위생용품 제조업자가 보고

※ 위생용품 소분 제조의 경우 품목제조보고 의무 없음

다. 구비서류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참조

1)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2)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전자문서를 포함)

라. 검토사항

1)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보고 받은 사항이 「위생용품 관리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내용이 구체적 인지 상세 검토

- 2)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명의 적정성 여부 등 철저 검토
 - ※ 위생용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료(성분)가 같은 경우 한 가지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하고, 사용한 원료(성분)가 다른 경우 다른 제품명으로 각각 품목제조보고 (단, 성분명이 같은 경우에도 유통전문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자의 주문에 의하여 제품명을 달리하여 제조하여야 하는 경우, 표시사항에 판매업소명 및 소재지를 병기하는 때에는 제품명을 달리하여 품목제조보고 가능)
- 3) 위탁생산 시 위탁생산 내역 기입 여부
 - ※ 품목제조보고서 '기타'란에 위탁생산 내역(수탁자 회사명 및 소재지) 작성
- 4)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은 즉시 서울행정시스템(시·군·구)에 입력 조치
- 5) 보고를 받은 내용을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기록·보관

마. 미보고 등 위반 시 조치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금액 제2호 나목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바.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1) 변경보고 대상

가) 제품명

나) 원료명(성분명) 및 배합비율

※ 수출용 위생용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해당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외

※ 배합비율은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성분의 배합비율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2) 구비서류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3)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기록·보관

4) 변경보고미보고 시 조치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금액 제2호나
목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를 아니 한 경우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6. 위생용품 위탁제조·처리업체 관리

가. 위탁 제조의 범위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주문량 증가 등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제조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할 수 있음

나. 위탁제품 품목제조보고

- 1) 위생용품제조업자가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을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기저귀, 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2) 구비서류

가)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나)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전자문서를 포함)

다. 위탁제품 품질관리

1) 위생지도 관리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위생용품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하는 경우, 위탁한 그 위생용품제조·처리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

2) 자가품질검사 : 자가품질검사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실시

3) 표시사항

가) 위생용품제조업자가 다른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위생용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위탁을 의뢰한 업체명 및 소재지로 표시하여야 함

나)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다른 위생물수건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위생물수건을 위생처리 한 경우에는 위탁을 의뢰한 업체명 및 소재지로 표시하여야 함

4) 수탁자는 수탁된 제품의 생산 및 작업기록(처리업 : 위생처리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처리업 : 세척·살균·소독에 쓰이는)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 관리

5) 행정사항

위탁하여 제조·가공·소분한 제품이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

구 분	‘제조업→제조업’ 위탁생산의 경우	‘판매자→제조업’ 주문생산의 경우*
품목제조보고	위탁자	제조업자
(제조)업소명 표시	위탁자	판매자 및 제조자
자가품질검사	위탁자 (수탁자도 가능)	제조자
행정처분	위탁자	제조자

* 「위생용품 관리법」에는 유통전문판매업의 종류가 없으므로, 위생용품 제조업자만 법에 의한 규제를 받음

7.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관리

가.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별표5 및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참조

나.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

1) 검사주기

가) 위생물수건: 매월 1회 이상(중금속 항목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영 제3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된 위생용품: 3개월마다 1회 이상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다) 위 가) 및 나)를 제외한 위생용품 : 6개월마다 1회 이상

2) 검사항목

순번	종류	검사항목	비고
1	세척제	- pH : 6.0~10.5 (3종제외) - 메틸알콜 : 1 mg/g 이하 (3종 제외) - 비소 : 0.05 mg/kg 이하 (3종은 0.4 mg/kg 이하) - 중금속 : 1 mg/kg 이하 (3종은 2 mg/kg 이하) - 형광증백제 : 불검출	
2	헹굼보조제	- 메틸알콜 : 1 mg/g 이하 - 비소 : 0.05 mg/kg 이하 - 중금속 : 1 mg/kg 이하 - 형광증백제 : 불검출	
3~8	일회용 컵·손가락· 젓가락·포크·ナイ프· 빨대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재질별 규격 적용	
9	일회용 종이냅킨	- 형광증백제 : 불검출 - 포름알데히드 : 4 mg/kg 이하	
10	식품접객업소용	- 형광증백제 : 불검출	

	물티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세균 : 2,500 CFU/g 이하 - 대장균 : 음성 - 메탄올(mg/L) : 20 이하 - 포름알데히드(mg/L) : 20이하 	
11	일회용 이수시개	<p><합성수지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류규격(mg/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 : 100 이하 · 카드뮴 : 100 이하 - 용출규격(mg/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금속 : 1.0 이하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 총용출량 : 30 이하 <p><목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류규격(mg/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금속 : 1.0 이하 · 비소 : 0.1 이하 · 허용외 타르색소 : 불검출 <p><전분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류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분 : 13 이하 - 용출규격(mg/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금속 : 1.0 이하 · 비소 : 0.1 이하 · 허용외 타르색소 : 불검출 	
12	일회용 면봉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상 : 이물질 없어야 함 - 면체와 축의 거리 : 1 mm 이상 - 축간 거리 : 40 mm 이상 - 면체와 축의 접촉강도 : 적합(나무재질 축에 한함) - 축의 강도 : 적합(나무재질 축에 한함) - 일반세균 : 300 CFU/g 이하 (면체에 한함) - 진균수 : 300 CFU/g 이하 (면체에 한함) - 형광증백제 : 불검출 (면체에 한함) - 포름알데히드 : 16이하 <p><어린이용 제품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원소 용출(mg/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티몬 : 60 이하 · 비소 : 25 이하 · 바륨 : 1,000 이하 · 카드뮴 : 75 이하 · 크롬 : 60 이하 · 납 : 9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은 : 60 이하 · 셀레늄 : 500 이하 - 유해원소 함유량(mg/kg) · 총 납 : 300 이하 · 총 카드뮴 : 75 이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DEHP, DBP, BBP : 총 합으로서 0.1 이하 	
13	일회용 기저귀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 : 3.0~10.0 (안감) - 형광증백제 : 불검출 (안감) - 포름알데히드 : 성인용 75 mg/L 이하 (안감 및 방수층) (위생깔개(매트)는 300 이하, 어린이용 20 이하) - 염소화페놀류(mg/kg) (안감 및 방수층) · 오염화석탄산 : 0.5 이하 · 사염화석탄산 : 0.5 이하 - 아조염료 : 30 mg/kg 이하 (안감 및 방수층에 한하며, 착색된 부위에만 적용) <p><어린이용 제품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원소 용출(mg/kg) · 안티몬 : 60 이하 · 비소 : 25 이하 · 바륨 : 1,000 이하 · 카드뮴 : 75 이하 · 크롬 : 60 이하 · 납 : 90 이하 · 수은 : 60 이하 · 셀레늄 : 500 이하 - 유해원소 함유량(mg/kg) · 총 납 : 300 이하 · 총 카드뮴 : 75 이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DEHP, DBP, BBP : 총 합으로서 0.1 이하 	
14	화장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름알데히드 : 4 mg/L 이하 - 형광증백제 : 불검출(미용화장지에 한함) 	
15	위생물수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상 : 손상·변색 여부 - 이물 : 이물 부착 여부 - 이취 : 이취 발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장균 : 음성 - 세균수 100,000 이하/장 - 납 : 20 mg/kg 이하 - 수은 : 20 mg/kg 이하 - 비소 : 20 mg/kg 이하 - 카드뮴 : 20 mg/kg 이하 - 6가 크롬 : 20 mg/kg 이하 	
16	일회용 행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름알데히드 : 4 mg/L 이하 - 형광증백제 : 불검출 	
17	일회용 타월	<p><키친타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류규격(mg/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Bs : 5 이하 - 용출규격(mg/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소 : 0.1 이하 · 납 : 1 이하 · 포름알데히드 : 4 이하 · 형광증백제 : 불검출 <p><핸드타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출규격(mg/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름알데히드 : 4 이하 	
18	일회용 팬티라이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상 : 백색으로 이취 및 이물질이 없어야 함 - 색소 : 시험법에 적합 - 산 및 알칼리 : 홍색 및 적색을 각각 나타내지 않아야 함 - 형광증백제 : 불검출 - 포름알데히드 : 표준용액보다 색이 진하지 않거나 또는 피크면적이 작아야 함 - 흡수량 : 질량 대비 5배 이상 - 삼출 : 3분 내에 삼출되지 않아야 함 - 강도 : 1분 내에 끊어지지 않아야 함 	
19	물티슈용 마른 티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광증백제 : 불검출 	

다. 검사기준

- 1)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별로 실시
-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 받은 품목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유형별로 실시할 수 있음
 -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해당제품폐기 및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해당 제품 수거·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형에 대한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 3)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
 - ※ 2019. 5. 8. 제조한 제품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제품의 검사주기가 3개월인 경우, 2019. 8. 7. 제조한 제품까지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 제조한 제품(2019. 8. 8.)으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
- 4) 자가품질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별 기준 및 규격 항목을 검사함.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위생용품의 경우는 해당하는 검사항목만 검사할 수 있음
- 5)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하는 자가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

라. 자가품질검사 지도·점검

- 1) 지방식약청, 시·군·구는 위생용품감시계획에 자가품질검사 관련 지도·점검을 반드시 포함시켜 지도·점검 실시
- 2) 자가품질검사 주기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
- 3)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의 유통 및 재사용 여부 확인
- 4) 자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검사실 및 장비·기구·시약류 등 보유

여부 등 확인

- 5) 검사성적서 허위작성 여부 확인(실제 검사 여부, 시험검사 결과와 다르게 판정, 검사관련 기록 위·변조, 다른 제품의 검사 결과 인용 등)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는 검사설비에 검사결과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록관리 시스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 6) 검사관련 장부 작성 및 보관 여부 확인(검사일시 기재, 검사 실시대장·검사일지·시약 장부대장 작성, 장비 사용·점검·유지보수 일지, 초자 구입대장 등 구비)
- 7)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규격 및 규정에 따라 검사하는지 여부(표준물질 사용 여부, 미생물 배양시간 준수, 필요시 확인 시험 및 공시험 여부, 유효기간 경과 표준물질 사용, 판정이 모호한 피크(Peak) 확인검사 등)
- 8) 수거·폐기 대상 위생용품의 적정 처리 여부(자가품질검사 부적합한 경우)
- 9)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 2년간 보관 여부 등

마. 영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제도 홍보

- 1) 영업신고 및 품목제조보고 시 자가품질검사 의무 사항과 행정처분 내용
- 2)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주기 등

8. 위생용품 제조·처리 실적보고

가.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나. 보고시기 : 연간보고(연도 종료 후 매년 1월 31일까지)

다. 보고기관 : 시·군·구

라. 보고방법

- 1) 영업자가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에 기업회원 로그인* 후 우리회사안전관리 서비스로 접속하여 생산실적보고 항목을 선택하여 직접 생산실적 입력(보고)한 것을 확인(승인)

* 인허가번호(아이디) 로그인, 공인인증서번호 로그인 필요 없음

- 2) 영업자가 직접 전산입력을 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에서는 영업자로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시행규칙 [서식12] '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로 생산(위생처리)실적을 보고 받아 식품행정통합시스템(admin.foodsafetykorea.go.kr)의 '생산실적보고' 사이트에 생산실적 입력

※ 신속한 자료취합 및 통계작성을 위해 영업자가 직접 입력토록 적극 유도

(보고업체용) 가이드는 식품안전행정포털→ 공지사항→ '생산실적보고 교육자료'에 게재

(공무원용) 가이드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정보제공공유→ 정보공유게시판→ 통합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

라. 행정사항

- 1) 생산실적 보고실시 이전에 보고대상 업체를 검토하여 누락되는 업체가 없는 지 확인 후 추가 조치
- 2)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위생용품을 위탁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보고

- 3) 생산실적 보고 담당자는 반드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오기 또는 과장 보고(업체규모 대 매출액 등)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승인 조치
- 가) 타 회사에 비해 단가 차이가 크거나 전년도에 비해 수량, 금액이 차이가 클 경우 등 보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업체에 연락하여 확인 필요
- 나) 생산액, 국내판매액의 단위가 '천원'이므로 '원'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할 것
- 다) 연간생산능력, 생산량, 국내판매량, 국외판매량의 단위가 'kg, l'이므로 '장, 매' 등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할 것
 ※ 위생물수건의 경우 '매'로 입력
- 라) 식품안전정보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국외판매금액의 단위가 '\$' 이므로 '원'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할 것
- 마) 업체현황 확인(업체명,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영업장연락처, 종업원 수 등)
- 4)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 5) 위생용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위반 : 과태료 30만원
 ※ 실적보고가 완료된 이후 생산실적보고 사이트를 조회하여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 6) 시·군·구에서는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서류로 보고한 생산·처리 실적을 전산(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입력

9. 위생용품의 표시관리

가. 목적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생용품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나. 근거법령

1)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2)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 2020년 4월 18일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을 따를 수 있음

※ 위생용품관리법 신규 적용업체(일회용 행주·타월·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 티슈)의 경우 기존의 제품 포장지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2020년 4월 18일까지)

다. 확인사항

위생용품의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위생용품의 표시 사항이며 세부사항은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참고

라. 표시사항 :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함(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 가능)

1) 주표시면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을 표시

2) 정보표시면에는 업체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 가능

3) 수입위생용품 중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수출국의 언어로 주표시면에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가능

- 4) “위생용품” 이라는 글자, 제품명, 업체명 및 소재지, 내용량,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 그 이외의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이어야 함
- 5) 세트포장(두 종류 이상의 각각 다른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
- 6) 수출위생용품에 대하여는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 7) 위생처리 하는 위생물수건에는 “위생용품” 이라는 글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음
- 8)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위생용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경우 해당 위생용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안됨. 다만, 내용량, 업체명 및 소재지를 소분된 사항에 맞게 표시하여야 함.
- 9) 자사제품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제품명, 제조업체명과 제조연월일만을 표시 가능
- 10)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한글표시를 생략가능(관광사업용 제외)

마. 세부 표시사항

- 1) 위생용품은 주표시면에 ‘위생용품’ 이라는 글자를 바탕색상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글상자 안에 표시하여야 함.

2) 제품명

- 가) 제품명은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이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사용 불가
- 나)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 명칭으로 표시. 다만,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 신고를 하는 위생용품은 신고관청에 보고 또는 신고한 명칭으로 표시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가) 위생용품제조·처리·수입업소의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를 표시. 다만, 위탁하여 위생용품을 제조(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을 의뢰한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로 표시

- (1) 제조업의 경우: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로 표시 가능
- (2) 수입업의 경우: 해당 수입 위생용품의 제조업소명을 병행 표시, 이 경우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으면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
- (3) 위생용품수입업소에서 수입한 위생용품을 단순히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위생용품제조업소의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소의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수입신고한 해당 제품 원료의 해외 제조업소명을 모두 표시
- (4)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자가 다른 위생용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위생용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생용품제조업소와 판매자의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4) 내용량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수량(매수, 개수), 길이 등 표시

5) 위생용품의 유형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생용품의 유형이 분류된 위생용품은 그 유형(「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위생용품의 유형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때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

가) 제조일은 “○○년○○월○○일”, “○○.○○.○○”, “○○○○년○○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표시

나)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 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함.

7) 원료명 또는 성분명

- 가) 위생용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 또는 성분, 재질을 표시
- 나) 원료명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 표시
- 다) 원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료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함.
- 라) 위생용품의 제조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서 불활성화 되는 효소나 제거되는 원료성분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 가) 사용 및 보관상 주의가 필요한 제품은 그 사항을 표시
- 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위생용품 유형에 따른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표시 하여야 함

9)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된 사용기준 및 제품별 표준사용 농도와 사용방법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붙임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전후 표시사항 비교

위생용품 종류	시행 전 ('18.4.19이전)	시행 후 ('18.4.19이후)
세척제 행굼보조제	<p>< (구) 공중위생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제조(수입)업소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 제조연월일 - 제조업 신고번호 - 중량·용량 또는 수량 - 원재료 및 함량 등 - 보관상 주의 - 반품 또는 교환 장소 - 유통기간 <p>* 사용기준 및 세척제 유형별 정의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 제품명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내용량(중량, 용량 또는 수량) - 제조연월일 - 성분명 - 위생용품의 유형 -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척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사용기준 · (세척제, 행굼보조제) 제품별 표준사용농도와 사용방법 - 기타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 세척제는 “야채, 과일 등 세척용”, 2종 세척제는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 세척용”,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 등 세척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위생물수건	<p>< (구) 공중위생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소명 - 소재지 - 영업신고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 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일회용 컵, 술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p>< (구) 공중위생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제조(수입)업소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 제조연월일 - 제조업 신고번호 - 중량·용량 또는 수량 - 반품 또는 교환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 제품명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내용량(수량) - 제조연월일 - 재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등재된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실리콘 고무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 위생용품의 유형 -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일회용 포크, ナイ프, 빨대	<p>< 식품위생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소명 및 소재지 - 재질명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에 한함) -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 주의사항 (해당되는 기구에 한함) - 기타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랩, 비내수용 전분제, 압력솔,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 전자레인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화장지	<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화장실용 화장지 / 미용 화장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위생용품 종류	시행 전 ('18.4.19이전)	시행 후 ('18.4.19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수/ 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치수 : 00 mm x 00 m (겹) ② 치수 : 00 mm x 00 mm 매수 : 매(겹) - 제조연월 - 제조자명 - 수입자명(수입품) -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조국명 - 사용상 주의사항 - 재활용에 대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본 제품은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표시, 「식품위생법」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따른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를 재생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생략 - 제품의 용도별 주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소비자상담실로 연락할 것 ② 일시에 많은 양을 번기에 투입하면 막힐 우려가 있음 ③ 적사광선 및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해 보관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④ 가연성 제품이므로 화기 또는 열기가 없는 곳에 보관할 것 ⑤ 향에 대해 과민반응이 있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할 것(향 처리 제품에 한함) 2) 화장실용 화장지의 추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위 글씨등과 쉽게 구별될 수 있는 방법(예: 적색글씨, 또는 주위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 등)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올바른 사용법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품에 ‘화장실용으로만 사용할 것, 식당이나 가정 등에서 냅킨용으로 사용하지 말것’을 표시 ② 유아가 포장용 비닐봉지를 뒤집어 쓸 경우 질식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할 것(비닐 포장지를 사용하는 경우 한함) ③ 화장지의 지관은 사용 후 번기에 버리지 말 것(지관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미용 화장지의 추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② 영·유아가 삼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내용량(길이 또는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를 표시할 때에는 너비와 겹수를 함께 표시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길이 : 00m (너비 : 00mm, 0겹)</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매수)을 표시할 때에는 가로, 세로와 겹수를 함께 표시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수량 : 00매 (00mm(가로)x00mm(세로), 0겹)</div> ·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할 때에는 길이, 수량의 표시사항과 함께 포장된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조연월일 - 원료명 - 위생용품의 유형 -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 재활용에 대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본 제품은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 (「식품위생법」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따른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를 재생원료로 사용한 경우 생략 가능)
일회용 행주·타월·팬티라이너, 티슈용 마른티슈	< 소관법률 없음 >	
일회용 종이냅킨	< (구) 공중위생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제조(수입)업소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 제조연월일 - 제조업 신고번호 - 중량·용량 또는 수량 - 반품 또는 교환 장소 	
식품접객업	< (구) 공중위생법 >	

위생용품 종류	시행 전 ('18.4.19이전)	시행 후 ('18.4.19이후)
소용 물티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제조(수입)업소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 제조연월일 - 제조업 신고번호 - 중량·용량 또는 수량 - 반포 또는 교환 장소 - 살균·보존제의 성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 제품명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내용량(수량) - 제조연월일 - 원료명 및 성분명 - 위생용품의 유형 -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일회용 면봉	<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연월 - 제조자명 - 수입자명 (수입품) -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조국명 - 사용상의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용 이물의 접촉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십시오. 2) 영유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유아용의 귀, 코 안쪽 깊이 넣지 마십시오. ②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③ 영·유아 혼자 사용하지 않게 하십시오. ④ 이물의 접촉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 제품명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내용량(수량) - 제조연월일 - 원료명 - 위생용품의 유형 -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의 경우, “영·유아의 귀, 코 안쪽 깊이 넣지 마십시오”, “영·유아가 직접 사용하지 않게 하십시오”의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일회용 기저귀	<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명 - 적용대상 [체중(유아), 허리둘레(성인) 등] -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감 (부직포 또는 사용한 주재료 하나) · 흡수층 (분쇄펄프, 고흡수제, 흡수지 또는 주재료 중 하나) · 방수층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사용한 주재료 하나) · 테이프 - 포장단위 (최소 판매단위 개수로 표시) - 제조연월 - 제조자명 - 수입자명 (수입) -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조국명 - 사용상의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시기에 교환하여 피부가 짓무르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사용후 처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후 대변은 변기에 버리고, 기저귀는 감싸서 휴지통에 버려주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 제품명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내용량(수량) - 제조연월일 - 원료명 및 성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감 / 흡수층 / 방수층 / 테이프에 사용된 원료와 성분의 명칭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위생용품의 유형 -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 적용대상(기저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용 기저귀는 허리둘레길이를 “00~00 cm” 등의 범위로 표시 · 어린이용 기저귀는 크기에 따라 사용가능한 표준체형의 유아 및 어린이 체중을 “00~00 kg” 등의 범위로 표시 · 신체치수에 의해 제품을 구분하지 않는 위생깔개(매트) 등 제품의 경우 적용대상을 “전 성인”, “전 유아 및 어린이용”으로 표시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예시) 체중(유아), 허리둘레(성인) 등</div>

<붙임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표시 기준

구분	사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표시
제조	제조업	제조업소명, 소재지
	국내제조[A] → 국내제조[B] 위탁(제조·가공·소분)	제조업소명(A), 소재지
	위생처리업	위생처리업소명, 소재지
	위생처리[A] → 위생처리[B] 위탁	위생처리업소명(A), 소재지
수입	해외제조[D] → 수입업체[A]	수입업소 : 업소명(A), 소재지 제조업소 : 업소명(D)
	해외제조[D] → 수입업체[A] → 소분제조[A] ※ 수입자[A] = 소분자[A]	제조(소분)업소 : 업소명(A), 소재지 제조(수출)업소 : 업소명(D)
	해외제조[D] → 수입업체[A] → 소분제조[B] ※ 수입자[A] ≠ 소분자[B]	제조(소분)업소 : 업소명(B), 소재지 제조(수출)업소 : 업소명(D)
	해외제조[D] → 수입·제조[A] → 소분제조위탁[B]	제조(소분)업소 : 업소명(A), 소재지 제조(수출)업소 : 업소명(D)
소분	국내제조[A] → 소분제조[B]	제조업소명(B), 소재지
기타	판매[A] : 국내제조[B]	제조업소 : 업소명(B), 소재지 판매업소 : 업소명(A), 소재지
	판매[A] : 국내제조[B] → 소분제조[C]	제조업소 : 업소명(C), 소재지 판매업소 : 업소명(A), 소재지
	판매[A] : 해외제조[D] → 수입[B]	수입업소 : 업소명(B), 소재지 제조업소 : 업소명(D) 판매업소 : 업소명(A), 소재지
	판매[A] : 해외제조[D] → 수입[B] → 소분제조[C] 위탁	제조(소분)업소 : 업소명(C), 소재지 제조(수출)업소 : 업소명(D) 판매업소 : 업소명(A), 소재지

10.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가. 목적

「위생용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근거법령 등

「위생용품 관리법」 제27조 및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고시

다. 운영방법

1) 공통사항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활동범위는 당해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행정절차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각 기관으로부터 행정유원을 요청받거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계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2) 합동단속 및 지도·계몽활동

- 가)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 활동 시 마다 활동일로부터 3일 전까지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에게 통보하여 가급적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함
- 나) 식약처 주관 합동단속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생용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활동하도록 함

3) 활동수당 지급

- 가) 소비자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5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

나)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라) 각 기관의 장은 기관별 소비자감시원 위촉 인원 수 및 연간 최대 활동 일수 (50일)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활동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4)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 신고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가)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부터 위반사항을 신고 받은 각 기관의 장은 위반내용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신고한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및 이첩기관 등에 즉시 회신하여야 함

나)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생용품관련 정보사항을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은 소비자보호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알게 된 위생용품관련 정보사항을 수집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제보하는 등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각 기관(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소비자감시원 위·해촉 및 활동 실적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입력

* <http://admin.foodsafetykorea.go.kr>, 생산실적보고, 위생교육, 감시원>감시원관리

다)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은 각 기관의 관할지역 안에서 거주지 등 연락처 변경 시에는 즉시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위촉기관은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

라) 각 기관의 장은 활동이 우수한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연회 이상 표창 및 포상을 실시

마)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때마다 타 기관과 중복되

지 않도록 위촉여부를 확인

바) 다음의 경우에는 임기 후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1)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및 그 가족이 위생용품 관련 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된 때
- (2) 위생용품위생교육 및 직무수행을 위한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5회 이상 무단 불참한 때
- (3)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

사) 위생용품관련학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방학기간에 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위·해촉 절차를 각 기관의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활성화 함

아)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허위·과대광고 행위 수시 모니터링(현장 정보수집) 실시 및 집중 관리(단속) 강화

1. 효율적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구축

가. 목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합리적인 지도·점검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변화하는 위생용품 안전관리 환경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한정된 단속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위생용품 안전 지도·점검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추진

나. 기본방향

- 1) 위생용품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마련 및 선진국수준의 위생용품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행정응원 및 상호 파트너십 구축
-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여건, 지도·점검 업무의 세부 활동별 특성, 위생용품안전관리 여건, 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적 역할분담체계」를 구축·시행
- 3)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구축
 - 가) 시·도 및 지방식약청은 「위생용품감시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
 - 시·도 또는 지방식약청은 감시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합동단속 실시 또는 감시·단속인력 상호 지원 등 유기적으로 협조체계 유지
 - 나) 지방식약청은 관내 시·도에 대하여 위생용품 안전에 관한 각종 교육, 기술 및 정보 등을 적극 지원 추진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시험분석업무에 대하여 시험분석 기술 지원 및 시험분석 업무 협조 등

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세부 기능별 역할분담 체계

번호	업무별	식약처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
1	행락철 성수제품 제조업소 관리	○ 총괄계획 수립 및 운영	○ 지방정부 행정응원에 대한 지원	○ 행락철 성수제품 제조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	○ 행락철 성수제품 제조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 ○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업체 홈페이지 공개 (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른 내용)
2	전국 합동단속	○ 총괄계획 수립 및 운영	○ 시·도 합동단속 지원·참여	○ 총괄계획에 따른 시·도 단위 계획 수립 및 시행	○ 합동 단속 참여
3	하절기 다소비품목 제조업소 관리	○ 총괄계획 수립 및 운영	○ 지방정부 행정응원에 대한 지원	○ 하절기 성수품목 제조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	○ 하절기 성수품목 제조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 ○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업체 홈페이지 공개 (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른 내용)
4	위생용품 수입업소 관리	○ 총괄계획 수립 및 운영	○ 위생용품 수입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업체 홈페이지 공개 (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른 내용)	○ 식약청 행정응원에 대한 지원 ○ 위생용품 수입업소 지도점검	○ 식약청 행정응원에 대한 지원 ○ 위생용품 수입업소 지도점검
5	다빈도 위반업소 중점 점검	○ 관리지침 제·개정	○ 다빈도 위반업소 관리 ○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업체 홈페이지 공개 (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른 내용)	○ 다빈도 위반업소 관리	○ 다빈도 위반업소 관리 ○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업체 홈페이지 공개 (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른 내용) 등
6	위생용품 제조·처리·수입·유통업소 지도·점검	○ 관리지침 제·개정 ○ 기획·계통 조사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계통조사	○ 관내 업체에 대한 총괄 계획 수립·운영	○ 관내 업체 지도·점검 세부계획 수립·시행
7	위생용품의 수거·검사	○ 관리지침 제·개정 - 총괄계획 수립·운영조사	○ 위생용품 사고에 따른 확인조사 ○ 기타 본부 지시에 따른 수거·검사업무 수행 ○ 수거검사 시행	○ 관내 연간 수거검사 총괄계획 수립·운영 ○ 위생용품 사건사고에 따른 관내 확인조사 ○ 수거검사 시행	○ 관내 연간 수거검사 계획에 따른 위생용품 수거검사 실시 ○ 위생용품 사건사고에 따른 관내 확인조사

번호	업무별	식약처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
8	위생용품의 허위·과대 광고 관리	○ 관리지침 제·개정 ○ 광고 모니터링 - 인터넷사이트 - 홈쇼핑·중앙일간지등 - 인터넷사이트(해외) ※ 사이버조사단	○ 본부 지시 사항 등 단속 ○ 광고 모니터링 - 인터넷사이트 - 홈쇼핑·중앙일간지등	○ 광고 모니터링 - 지방지, 지방 TV 방송 - 지역 케이블 방송 - 인터넷, 무가지 ○ 관내 총괄 관리 ○ 위반업소 단속	○ 광고 모니터링 - 지방지, 지역생활정보지 - 지역 케이블 방송 ○ 관내 위생용품판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 위반업소 단속
9	부장 불량 위생용품 관리	○ 관리지침 제·개정	○ 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10	위생용품 민원관리	○ 관리지침 제·개정	○ 지침에 따라 민원처리 -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 운영	○ 지침에 따라 민원처리 -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 운영	○ 지침에 따라 민원처리 -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 운영
11	국내외 위생용품 사고 (언론 이슈) 등에 대한 대응	○ 전국 총괄관리 및 언론대응 ※사안발생시 별도 시행	○ 위해정보 및 사회문제 우려 제품에 대한 긴급 수거·검사 - 사실 확인 추적조사	○ 중앙지시에 따른 기초 단체기관의 현장 확인 점검 및 수거검사 지휘관리	○ 중앙지시에 따른 현장 확인점검 및 수거검사

라. 지도·점검 실적 등 통계관리

- 1)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 모든 실적은 당일 입력을 완료하여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 2) 시스템 입력 시 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하지 않도록 입력 철저
※ 서식을 통한보고(문서시행)는 일부를 제외하고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함

구분	시스템
시·군·구	서울행정시스템
시·도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식약처(지방식약청)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지도·점검 시 적발사항이 없는 경우도 점검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여부 입력 철저

마. 2020년도 연간 지도·점검(수거검사 포함) 추진 일정 현황

월	점검명	점검기간	주관기관 (참여기관)
3	행락철 나들이 성수 품목 제조업소 관리	3.18. ~ 3.22.	지자체
5	위생용품전국합동단속	5.25. ~ 5.29.	지자체 (지방식약청)
6	하절기 다소비품목 제조업소 관리	6.22. ~ 6.26.	지자체
7	위생용품수입업소 관리	7.15. ~ 7.19.	지방식약청
10	다빈도 위반업소 중점점검	10.19. ~10.23.	지자체, 지방식약청

1-1. **행락철 나들이 성수품목 제조업소 관리**

가. 목적

행락철 성수위생용품 제조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보건수준 향상

나. 대상

행락철 나들이 성수품목인 일회용 젓가락·숟가락·포크·ナイ프·컵·종이 냅킨·빨대 등의 품목을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소 점검 및 관련제품 수거·검사

다. 추진일정: 3.18.~3.22.

라. 주요점검 사항

- 1) 형식적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위해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
- 2)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및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유통 판매 여부
- 3) 무표시 제품의 유통 판매 여부
- 4)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마. 행정사항

- 1) 단속결과 위반업체는 언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 (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
- 2) 상습·고의 또는 위해위생용품 사범은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병행
- 3) 점검내역 및 수거·검사의뢰 내역 등 모든 실적은 당일 전산시스템 입력
*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 식품행정통합시스템(새올시스템) 입력 철저
- 4)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당해 영업소에 출장하여 해당 제품 압류조치(부적합제품 유통·확산 조기 차단)

1-2. 전국합동단속

가. 목적

전국적인 동시 단속이 필요한 위생용품 등에 대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기관별 정보공유 및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안전한 위생용품 공급기반 마련

나. 기본방향

- 1) 형식적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취약분야를 선별하여 기본안전 수칙 위주로 집중(위생점검표 활용)
- 2) 시·도 주관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3) 부적합 이력이 높은 제품 또는 상습·고의적 위반업소 중점 단속
 - * 부적합 이력 품목 : 위생물수건,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빨대·손가락·포크·물티슈·냅킨·행주
- 4) 단속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적발된 위반사항 언론에 보도

다. 추진일정: 5.25.~5.29.

라. 추진체계

- 1) 식약처: 총괄계획 수립 및 운영
- 2) 지방식약청: 시·도 합동단속 지원·참여
- 3) 시·도: 세부 단속계획 수립·시행(관할 지역 운영 총괄)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수거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
- 4) 시·군·구: 지도·단속 참여

마. 행정사항

1) 점검 및 수거검사결과 보고

- 지도·점검 내역 당일 전산시스템 입력

2) 위반사항 중 고의적, 상습적 위반 또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 등 아래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처분 병행

- 무신고 위생용품 제조·처리·소분 영업 행위
-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표시한 유통기한) 변조 행위
-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행위
- 허용외 성분(CMIT/MIT 혼합물 등)을 사용하여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행위

1-3. 하절기 다소비품목 제조업소 관리

가. 목적

하절기 성수위생용품 제조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보건수준 향상

나. 대상

하절기 다소비 품목인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타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의 품목을 제조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소 점검 및 관련제품 수거·검사

다. 추진일정: 6.22.~6.26.

라. 주요점검 사항

- 1) 형식적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위해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
- 2)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및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유통 판매 여부
- 3) 무표시 제품의 유통 판매 여부
- 4)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마. 행정사항

- 1) 단속결과 위반업체는 언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 (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
- 2) 상습·고의 또는 위해위생용품 사범은 수사하여 사법 조치 및 행정처분 병행
- 3) 점검내역 및 수거·검사의뢰 내역 등 모든 실적은 당일 전산시스템 입력
*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 식품행정통합시스템(새울시스템) 입력 철저
- 4)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당해 영업소에 출장하여 해당 제품 압류조치(부적합제품 유통·확산 조기 차단)

1-4. 위생용품수입업소 관리

가. 목적

위생용품수입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서류검사 등으로 통관된 수입유통 위생용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하여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

나.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다. 추진일정: 7.15.~ 7.19.

라. 기본방향

- 1)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수입 위생용품 판매행위 등
- 2) 수입 위생용품의 용도(외화획득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용 등) 외 판매여부
- 3)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행위
- 4) 허위·과대광고 행위
- 5) 부적합 이력 제품 및 서류검사 통관 제품 수거·검사 실시
 - * 부적합 이력 품목 : 위생물수건,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빨대·손가락포크·물티슈·냅킨·행주

마. 행정사항

- 1) 단속결과 위반업체는 언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 (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
- 2) 점검내역 및 수거·검사의뢰 내역 등 모든 실적은 당일 전산시스템 입력
 - *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 철저
- 3)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당해 영업소에 출장하여 해당 제품 압류조치(부적합제품 유통·확산 조기 차단)

1-5. 다빈도 위반업소 중점점검

가. 목적

「위생용품 관리법」을 반복 위반한 업체 등을 별도로 중점 점검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위생용품 관리법령 질서 확립

나. 추진일정: 10.19.~10.23.

다. 기본방향

1) 다빈도 위반업소 대상

- 가) 「위생용품 관리법」을 계속(연 2회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5회 이상)하여 위반하는 업체
- 나) 대상 업체는 반기별(1월, 7월)로 행정처분 이력을 반영하여 선정
- 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제외(위생교육 미실시, 영업신고증 영업소 내부 미비치 등)

2) 중점점검 방법

- 가) 시·군·구는 관할 신고 업종(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선정
- 나) 선정 업소 중점점검 실시
중전의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업체 전반의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한 중점 점검 실시

라. 행정사항

- 1) 점검내역 및 수거·검사의뢰 내역 등 모든 실적은 당일 전산시스템 입력
 - *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 철저
- 2) 단속결과 위반업체는 언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 (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

- (3) 중점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고발 병행
- (3) 점검 후 3개월 주기로 재점검하여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해제

2. 위생용품 영업소 지도·점검

가.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나. 기본방향

- 1) 소비자 기만행위 및 위해우려 품목 위주로 집중 점검
- 2) 계절별 다소비 품목 중점 관리
- 3) 언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품목 및 관련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 이슈 사항과 관련한 항목(기준·규격) 위주의 수거·검사 병행
- 4) 「위생용품 관리법」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등 위생관리 강화
- 5) 수출부적합제품(국내 유통 시) 제조업체 위생관리 강화
* 수출부적합 제품과 동일 제품이 국내 유통·판매 되는 경우 수거·검사 병행
- 6)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및 무신고 제조·처리·수입 제품 등 점검 강화
 - 가) 무신고 제조·처리·수입 및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행위
 -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 7) 수입 위생용품의 용도(외화획득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용 등) 외 판매여부
- 8)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과 같은 품목 제조·처리·수입업체 관리 강화
* 위생물수건,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숟가락·포크·냅킨·행주·빨대·면봉

다. 지도·점검 계획

1) 일상 지도·점검 계획

각 관할기관에서는 지도·점검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매월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점검자 종합의견을 “점검내용“에 반드시 등록하여 다음 점검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필수 입력

점검내용(점검자 의견)

(ex)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에서 지도한 내용 등 후임 점검자가 영업장의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작성

2) 특별 지도·점검 계획

가) 위해정보, 언론보도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관련 이슈발생시 지도·점검 및 계통조사

※ 해당 사항별로 별도 공문 지시예정

나) 계절별 위생용품 중점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지도·점검 절차 및 요령

절 차	요 령
지도점검반 편성	지도점검의 객관성 및 투명성 유지를 위하여 2인 1조 편성을 원칙으로 함 ※ 감시인력 등 감안,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적극 활용
증표제시	출입·검사 또는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등)제시
출입·검사 목적 등 서류 제시	출입·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영업자에게 조사기간, 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의 서류를 제시
확인(자인)서 징구	출입 검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영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 증빙서류 및 사진 등 증거물 확보
수거증 발급	검사를 목적으로 검체를 수거하는 경우 반드시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함

라. 행정사항

- 1) 무신고 제품, 무표시 제품 및 제조일자 변조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행위자 적발 후 형사고발 조치
- 2) 인체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제조일자 또는 내용량을 허위 표시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에 불시 출장하여 영업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제 조치
- 3) 위생용품 위생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사후관리 철저
- 4)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
- 5)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및 '새울시스템'에 자료 입력
 - 당일 점검 및 제품 수거·검사 내역 입력
 - 점검결과(적합/부적합) 반드시 입력
- 6) 점검 업체 출입 시 영업자에게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 를 제시하고, 기관장(부서장) 명의의 “협조서한문” 교부 및 시설의 책임자가 확인·서명한 수령증 회수(복명서에 첨부)
- 7) 적발된 위반사항은 관련 제품명, 판매업소, 과대광고 내용 등을 각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적극 공개(위반사실의 공포에 해당하는 내용)

<붙임1> 위생용품제조업소 점검표

위생용품제조업소 점검표

□ 영업신고사항

업 소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영업신고번호	
생산 제품의 유형			
영업장 면적(m ²)	종 사 자		연간 매출액(천원) 연간 생산량(kg)
작업장	노무직	명	
실험실	기술직	명	
창고	사무직	명	
기 타	기 타	명	

□ 지도·점검 현황

구 분	세 부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반 또는 현지지도사항
1. 영업(신고) 사항 관리	가. 영업신고	○ 영업신고 여부		
		○ 영업신고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나. 품목제조보고	○ 품목제조 미보고, 미변경 품목 생산 여부 ○ 원료배합비율 등의 적합성 여부		
	다. 변경신고	○ 신고사항 임의변경 여부(업체명, 소재지, 주요설비 등)		
	라. 위생교육	○ 위생교육 수료 여부		
	마. 기타사항			
2. 영업자 준수사항 관리	가. 생산기록 및 원료수불일지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작성·보관(3년) 여부		
		○ 원료출납관계서류 작성·보관(3년) 여부		
	나. 제품 거래기록	○ 제품의 거래기록 작성·보관(3년) 여부		
	다. 수질검사	○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 부적합 지하수 사용 여부		

구 분	세 부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반 또는 현지도사항
	라. 무신고 제품 사용여부	o 위생용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무신고 제조·가공·소분·수입 위생용품 사용여부		
	마. 종사자 위생교육	o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계획 수립여부 및 정기적 위생교육 실시여부		
	바. 변경내용 기록· 저장 시스템 설치 운영	o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검사설비에 검사결과의 변경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 설치·운영 여부		
	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o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하거나 이를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에 사용 여부		
	아. 위탁생산제품 관리	o 위탁하여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경우 위생관리상태 등 점검 여부(반기별 1회 이상)		
	자. 기타사항			
3. 보고서류 관리	가. 생산실적 보고	o 생산실적 보고 이행 여부		
	나. 폐기 증명자료 작성 및 보관	o 자사제품제조용원료, 외회획득용원료로 수입한 위생용품을 부패·변질·유통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폐기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작성 및 보관(3년) 여부		
	다. 기타사항			
4. 원료관리	가. 기준규격	o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이외의 성분 사용여부 (세척제, 행굼보조제)		
	나. 기타사항			
5. 제품제조 관리	가. 제조공정	o 품목제조보고 성분배합비율 상의 성분이외의 원료 사용 여부		
	나. 자가품질검사	o 검사실, 기기류 및 시약류 비치 여부		
		o 검사실이 없는 업체인 경우 공인검사기관 위탁 여부 확인		
		o 품목별 자가품질검사 주기 준수 여부		
		o 자가품질검사 항목 준수 여부		
		o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 보관 여부(해당 제품의 검사일로부터 2년간 보관)		

구 분	세 부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반 또는 현지도사항
		o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유통 여부		
	다. 기타			
6 표시사항 점검	가. 표시사항	o 표시기준 일반사항 적정여부 - 제품명 사용의 적정성 등		
		o 품목별 표시사항 적정여부		
		o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목적 보관·판매 여부		
		o 유통기한 위·변조 여부(유통기한 표시제품)		
		o 제조일자 위·변조 여부		
나. 허위·과대광고	o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 영업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 - 제조년월일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 - 효과를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 - 명칭, 원료, 제조방법, 성분, 용도, 품질과 다른 내용 으로 표시			
		o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지정된 검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이용한 표시·광고		
	다. 기타			
7. 시설기준 점검	가. 건축물	o 건물의 자체는 위생용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위생용품을 오염시키지 아닐 것		
		o 적절한 온도·습도 유지 및 환기 여부		
	나. 작업장	o 독립건물 또는 위생용품제조·가공외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 여부		
		o 원료처리실·제조가공소분실·포장실 등의 분리·구획 (구분) 여부		
		o 바닥면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여부		
		o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내수 처리 여부		
		o 작업장 내부 구조물,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의 세척·소독 용이성		
o 환기시설 설치 여부방충·방서시설 설치 여부				
o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차단 여부				

구 분	세 부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반 또는 현지지도사항
	다. 급수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o 폐기물·폐수처리시설과 격리 여부		
		o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공급 여부		
	라. 창고등의 시설	o 지하수 취수원이 오염시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		
		o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 창고 설치 여부		
	마. 검사실	o 창고의 바닥에 양탄자 설치 여부		
		o 기준·규격 검사를 위한 검사실 설치여부		
바. 기타	o 기타			
8. 기타				
점검자 종합의견				

점검일자 : . . .

확 인 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2>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점검표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점검표

□ 영업신고사항

업 소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영업신고번호			
영업장 면적(m ²)		종 사 자		연간 매출액(천원)	연간 처리량(매)
작업장		노무직	명		
실험실		기술직	명		
창고		사무직	명		
기 타		기 타	명		

□ 지도·점검 현황

구 분	세 부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반 또는 현지도사항
1. 영업(신고) 사항 관리	가. 영업신고	o 영업신고 여부		
		o 영업신고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o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나. 변경신고	o 신고사항 임의변경 여부(업체명, 소재지, 주요설비 등)		
	다. 위생교육	o 위생교육 수료 여부		
	라. 기타사항			
2. 영업자 준수사항 관리	가. 위생처리작업 기록 및 원료 출납관계서류	o 위생처리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작성·보관(3년) 여부		
		o 세척·소독·살균 등에 쓰이는 원료의 입고· 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관계서류 작성·보 관(3년) 여부		
	나. 제품 거래기록	o 제품의 거래기록 작성·보관(3년) 여부		
	다. 수질검사	o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지하수 사용 여부		
	라. 작업장 청결 유지	o 위생물수건을 처리함에 있어 작업장 청결 유 지 및 월 1회 이상 소독 실시 여부		
마. 종사자 위생	o 종사자의 작업 시 위생복 청결유지, 위생복,			

구 분	세 부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반 또는 현지도사항
		마스크, 작업화 착용여부		
	바. 종사자 위생교육	o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계획 수립여부 및 정기적 위생교육 실시여부		
	사. 변경내용 기록· 저장 시스템 설치 운영	o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검사설 비에 검사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 저장되는 시스템 설치·운영 여부		
	아. 위탁처리제품 관리	o 위탁하여 위생용품을 위생처리 하는 경우 위생 관리상태 등 점검 여부(반기별 1회 이상)		
	자. 기타사항			
3. 보고서류 관리	가. 처리실적 보고	o 위생물수건 처리실적 보고 이행 여부		
	나. 기타사항			
4. 제품관리	가. 자가품질검사	o 검사실, 기기류 및 시약류 비치 여부 o 검사실이 없는 업체인 경우 공인검사기관 위탁 여부 확인 o 품목별 자가품질검사 주기 준수 여부 o 자가품질검사 항목 준수 여부 o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 보관 여부(해당 제 품의 검사일로부터 2년간 보관) o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유통 여부		
	나. 제조기준 준수	o 4일 이내 회수 처리 여부 o 세탁 전 부착된 오물의 제거 및 오염도에 따른 분류 여부 o 오염도에 따른 물수건의 처리방법 준수 여부 o 물수건을 포장하기 전 접는 과정을 수동으로 작업하는 경우 위생비닐장갑 착용 등 준수 여부 o 물수건의 세척·살균·접는 과정이 끝나는 즉시 포장 및 포장 후 봉합 여부 o 포장된 물수건은 신속히 공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10℃ 이하에서 보관 여부		
	다. 기타			

구 분	세 부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반 또는 현지도사항
5 표시사항 점검	가. 표시사항	o 표시기준 일반사항 적정 여부		
		o 제조일자 위·변조 여부		
		o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대여) 여부		
	나. 허위·과대광고	o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 영업신고 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 - 제조년월일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 - 효과를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		
	다. 기타			
6. 시설기준 점검	가. 건축물	o 건물의 자체는 위생용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위생용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o 적정한 온도·습도 유지 및 환기 여부		
	나. 작업장	o 독립건물 또는 위생용품제조·가공외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 여부		
		o 원료처리실·제조가공소분실·포장실 등의 분리·구획(구분) 여부		
		o 바닥면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여부		
		o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내수 처리 여부		
		o 작업장 내부 구조물,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의 세척·소독 용이성		
		o 환기시설 설치 여부방충·방서시설 설치 여부		
		o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차단 여부		
		o 폐기물·폐수처리시설과 격리 여부		
	다. 급수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o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공급 여부		
		o 지하수 취수원이 오염시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		
	라. 창고등의 시설	o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 창고 설치 여부		
		o 창고의 바닥에 양탄자 설치 여부		
마. 검사실	o 기준·규격 검사를 위한 검사실 설치여부			
	o 기타			
	바. 기타			

구 분	세 부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반 또는 현지도사항
7. 기타				
점검자 종합의견				

점검일자 : . . .

확 인 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3> 위생용품수입업소 점검표

위생용품수입업소 점검표

□ 영업신고사항

업 소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영업신고번호			
주요수입품목					
영업장 면적(m ²)		종 사 자		연간 판매액(천원)	연간 판매량(kg)
사무실		노무직	명		
창고		사무직	명		
기 타		기 타	명		

□ 지도·점검 현황

구 분	세 부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반 또는 현지지도사항
1. 영업(신고) 사항 관리	가. 영업신고	o 영업신고 여부		
		o 영업신고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o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나. 변경신고	o 신고사항 임의변경 여부(업체명, 소재지, 주요설비 등)		
	다. 위생교육	o 위생교육 수료 여부		
	라. 기타사항			
2. 영업자 준수사항 관리	가. 제품거래기록	o 수입위생용품의 제품명·판매일·판매처·판매량·수입일·선하증권번호·제조국·수출국·제조회사명·수출회사명을 기록한 거래명세서 및 내용명세서 보관(2년) 여부		
	나. 통관서류	o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수입신고 확인증(2년) 및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위생용품의 신고필증 보관(5년) 여부		
	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o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운반·보관 여부		

구 분	세 부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위반 또는 현지지도사항
	라. 종사자 위생교육	o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계획 수립여부 및 정기적 위생교육 실시여부		
	마. 기타사항			
3 표시사항 점검	가. 표시사항	o 표시기준 일반사항 적정 여부		
		o 제조일자 위·변조 여부		
		o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여부		
	나. 허위·과대광고	o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 영업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 제조년월일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 - 효과를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 - 명칭, 원료, 제조방법, 성분, 용도, 품질과 다른 내용 으로 표시		
	다. 기타			
4. 시설기준 점검	가. 사무소	o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 설치 여부		
	나. 보관 창고	o 독립건물 또는 위생용품이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 설과 분리 또는 구획(구분) - 위생용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보관창고 설치 면제		
	다. 기타			
5. 기타				
점검자 종합의견				

점검일자 : . . .

확 인 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3. 위생용품의 수거·검사

가. 목적

위생용품 유형·위해우려 품목 중심의 효율적 수거검사를 통한 부적합 제품의 유통차단

나. 법적근거

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다. 기본방향

1) 공통사항

가) 검체의 특성에 따른 검체 채취기준을 준수하고, 중복 수거·검사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수거·검사

나)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위생용품판매점에서 동일날짜에 일괄 수거를 지양하고, 수거제품이 특정 제조업체 또는 특정 품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거

다) 도매·전통시장·국도변 슈퍼 등 유통위생용품, 대형 위생용품 판매점·백화점 PB(자체브랜드)제품,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판매제품* 등 수거 검사 강화

* 온라인 수거제품의 경우 구입 영수증, 택배영수증, 관련 제품 사진 등 구매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수거증의 피수거란에 인터넷 구매로 표시·작성

라) 검사결과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부적합 한 위생용품은 신속히 수거·폐기되도록 조치

마) 부적합 제품 확산방지를 위한 유통 초기제품 수거·검사

바) 관할 지역 내 위생용품에 대한 부적합 항목을 분석 평가하고 반복된 부적합 항목에 대해 원인조사 실시 및 문제점 개선

2) 유의사항

모든 수거는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나 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음

구 분	대 상 위 생 용 품
무상수거 대상 위생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수거할 때 ○ 위생용품을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할 때 ○ 수입 위생용품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할 때
유상수거 대상 위생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소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위생용품을 시험검사용으로 수거할 때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개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수거할 때 ○ 기타 무상수거대상이 아닌 위생용품을 수거할 때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 가능

3)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수거·검사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적법 절차에 따라 검체 수거하고 수거증을 작성, 위생용품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식약처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계획수립 ○ 위해정보, 사회적 이슈발생 등에 따른 수거검사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연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수거검사 ○ 사건사고 사전 예방 및 조치를 위한 본부 지시사항 수거검사 ○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조사를 위한 수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도별 연간 수거검사 계획 수립(시·도) ○ 관내 유통위생용품 수거검사 (시, 도 및 시·군·구) ○ 관내 제조(처리)업소 등 수거·검사결과 분석·평가 ○ 사건사고 사전 예방 및 조치를 위한 본부 지시사항 수거검사

라. 주요내용

1)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

가) 대상 : 유통 위생용품(수입제품의 경우 서류검사 제품 위주로 수거·검사)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 포함)

다) 주기 : 연중

라) 검사항목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해당 제품 규격 항목

마) 추진방법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1) 관할지역 내 제조·처리·수입 위생용품에 대해 우선 책임 수거·검사 실시
- (2)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 품목 및 통관단계 부적합 이력 품목을 포함하여 수거·검사 실시
 - * 부적합 이력 품목 : 위생물수건,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빨대·숟가락·포크·물티슈·냅킨·행주 등

2)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 수거·검사

- 가) 대상 : 국내·외 위해정보, 언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위해우려 위생용품
- 나) 기관 :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 포함)
- 다) 주기 : 수시
- 라) 검사항목 : 제외국 동향 및 위해정보에 따른 위해우려 항목

3) 사건·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위한 식약처(본부) 특별지시에 따른 수거·검사

라. 행정사항

1) 수거·검사의뢰 내역 등 모든 실적은 당일 전산시스템 입력

- * 수거내역 입력(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 시·도(시·군·구) 식품위생담당부서)
- * 검사결과 입력(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2) 모든 수거·검사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통합 림스)을 통해 수거검사 의뢰 및 결과통보

3) 미 입력 또는 잘못 입력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

4) 수거검사 기관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 폐기 대상인 경우 당해 제품 수거장소에 재차 출입·검사하여 당해 제품을 압류조치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

4. 위생용품의 허위·과대광고 관리

가. 목적

위생용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및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건전한 유통·판매 도모

나.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다. 기본방향

- 1) 광고매체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 인터넷, 신문, 방송 등 광고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2)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3) 영업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라. 단속대상

- 1) 인터넷(포털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개인판매 사이트 등), 방송(지역케이블방송, 홈쇼핑 포함),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매체
- 2)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제품, 민원신고 제품, 불법 유통 제품 등 중점 모니터링

마. 단속체계

- 1) 식약처,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는 각 해당 단속 매체의 모니터링을 실시

식약처(본부)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
○허위·과대광고 관리 총괄 ○관리지침 제·개정 ○광고 모니터링 -인터넷 사이트 -홈쇼핑 중앙일간지, 팟캐스트 등 -기타 기획 모니터링 ※사이버조사단	○ 본부지시사항등단속	○광고 모니터링 -지방지, 지방 TV 방송 -지역 케이블 방송 -인터넷, 무가지 ○관내 총괄 관리 ○위반업소 단속	○광고 모니터링 -지방지, 지역생활정보지 -지역 케이블 방송 ○관내 위생용품판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위반업소 단속

2) 모니터링 운영

- 가) 매체별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 운영, 시간, 방법, 매체별 증거물 확보, 위반 업소 조치방법 등에 관한 세부 모니터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니터링 실시
- 나) 방송, 인터넷, 신문(무가지 포함) 등 대중매체 <붙임1>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다)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허위·과대광고 행위 수시 모니터링(현장 정보수집) 실시 및 집중 관리(단속) 강화
- 라) 일일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모니터링 기록 유지

모니터 일자	모니터요원 (성명)	광고 매체	매체명	제품명	업소명 (소재지)	모니터링결과	광고내용 요약	조치 사항	비고
						※ 적합/부적합 기재 (부적합인 경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활용)	※ 부적합인 경우만 기재	※부적합인 경우만 기재	

바. 행정사항

- 1) 적발된 위반사항은 관련 제품명, 판매업소, 과대광고 내용 등을 각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적극 공개(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
- 2) 점검내역 및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을 식품행정통합시스템(새울시스템)에 입력

<붙임 1>

모니터링 대상 광고매체

○ 식약처 : 인터넷 모니터링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일간지(경제지)와 방송매체를 구분하여 집중모니터링

식약처 모니터링 대상매체				
일간지 (경제지 포함)	인터넷 (포털사, 쇼핑몰, 소셜커머스 등)		방송매체 (홈쇼핑)	잡지
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일간스포츠 국민일보 스포츠서울 내일신문 문화일보 스포츠동아 한겨레 서울신문 한국스포츠경제 한국일보 세계일보 스포츠조선 매일경제	포털사	네이버 다음 구글 줌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여성동아 여성조선 퀸 메종 헬스조선 맘&양광 쿠켄 우먼센스 베스트베이비 앙주플러스
	쇼핑몰	홈플러스 주식회사 (주)이마트 롯데마트mall NH채움몰 (주)현대홈쇼핑 (주)CJO쇼핑 (주)GS홈쇼핑(GS샵) (주)NS쇼핑 롯데홈쇼핑(롯데몰) (주)롯데닷컴 (주)홈&쇼핑 공영홈쇼핑 (주)신세계 (주)이랜드리테일(뉴코아) (주)AK인터넷쇼핑몰		
	소셜커머스	(주)포워드벤처스(쿠팡) (주)티켓몬스터 (주)위메프		
	오픈마켓	(주)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SK플래닛(주)11번가 주식회사 인터파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스토어팜)		
	기타	팻캐스트		

○ 시·도(시·군·구) : 각 지역별 지방지 및 지방TV방송, 지역케이블방송, 지역생활정보지, 무가지, 잡지, 전단지 등을 집중모니터링

-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일보, 경남신문, 경북매일,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국제신문(부산), 광주일보,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일보(대구), 부산일보, 영남일보(광주),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중도일보(대전), 중부매일(충북), 중부일보(경기수원), 제주일보, 충청투데이(대전), 한라일보(제주), 매일신문(대구), 한경비즈니스(서울) 등

5. 부정·불량 위생용품 관리

가. 목적

부정·불량위생용품의 제조·소분·처리행위 등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위생용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습·고의적 위해위생용품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근절

나. 업무역할체계

1) 중앙(지방식약청)

- 가) 위생용품 위해방지를 위한 기획·계통조사
- 나) 국내·외 위해정보에 대한 기획단속 및 수사의뢰
- 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위생용품안전 문제나 소비자 불만사례 및 안전·위생관리 개선이 필요한 분야
- 라) 소비자 기만행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2) 시·도(시·군·구)

- 가) 관내 무신고 위생용품 등 부정·불량위생용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단속
- 나) 상습·고의적 위해위생용품 사범에 대한 수사의뢰

다. 단속 방법: 위해사범 위주의 기획단속 및 계통조사 실시

- 1) 필요시 식약처 및 지방청, 지자체 간 업무 공조체계 유지 및 합동단속 실시
- 2) 시·도는 전국적 규모의 기획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합동단속 실시
- 3) 기타 식약처장,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라. 단속결과 조치

- 1) 단속결과 위반업체는 언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 (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

- 2) 상습·고의 또는 위해위생용품 사범은 수사하여 사범 조치 및 행정처분 병행

마. 행정사항

- 1) 수집된 정보사항 중 다른 기관 관련사항은 신속한 단속을 위해 해당 기관에 즉시 이첩 또는 통보
- 2) 형식적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위해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
- 3) 점검내역 및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을 식품행정통합시스템(새올시스템)에 입력

6. 위생용품 민원관리

가. 적용범위

- 1) 해당기관 : 지방식약청, 시·도, 시·군·구
- 2) 대상 : 「위생용품 관리법」을 적용 받는 위생용품

나. 민원 신고방법 : 전화, 온라인, 일반우편(서면), FAX, 방문 등

다. 조사·처리기간

- 1) 중대 피해사고 민원신고에 대한보고
 - ※ 소비자의 중대 피해사고 민원신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를 위해 식약처(위생용품·담배관리TF)로 유선 보고 및 협의
 - 가) 동일 제품에 대한 다발성 신고
 - 나) 어린이 피해 등 인체 상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신고
 - 다) 처리기관에서 위해하거나 중대한 피해 사례로 판단되는 신고 등
- 2) 민원신고 후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중간 조사 진행상황 통보(문자·이메일)
- 3) 민원신고 후 14일 이내 최종 조사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 ※ 조사결과 통보 방식 : 서신 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민원인 요청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 4) 조사·처리가 지연될 경우(수거·검사 진행 등)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보(공문)

라. 민원 정보보호 철저

-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 준수
- 2)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관리 철저

마. 관리체계 및 행정조치

1) 관리체계

가) 지방식약청

- (1) 지방식약청 홈페이지의 신고센터 접수민원 처리
 - ※ 각 지방식약청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개설
- (2)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처리
- (3) 민원 신고 사항을 동 신고센터에 등록 관리

나) 시·도(시·군·구)

- (1)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신고센터 접수 민원 처리
 - ※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개설
- (2)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처리
- (3) 민원 신고 사항을 동 신고센터에 등록 관리
 - ※ (공통)조사기관 민원 종결처리 시 반드시 종결처리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결과 회신

2) 행정사항 및 처리절차

가) 민원 신속 조사·처리

- 접수 또는 이첩 받은 신고내용에 대해 처리지연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신속 조사 결과 회신

나) 위생용품관련 민원은 반드시 최초 접수받은 기관에서 접수·처리(이첩)토록 하고 관할기관이 아니라는 사유로 접수를 거부하지 말 것

다) 조사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방법

- 민원인이 조사결과를 인지하지 못하여 재 신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종 조사기관에서는 반드시 민원인에게 공문 등으로 조사결과 통보

라) 점검내역 및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을 식품행정통합시스템(새올시스템)에 입력

7. 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 제고

가. 목 적

공무원의 위생용품관련 업체 단속시 적발(위반)사항을 투명하고 명료하게 처리 함으로서 부패발생을 근절하고 단속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함

나. 대상업체

위생용품 관리법령에 의한 제조·수입·소분·처리 등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

다. 조치사항

- 1) 단속기관 부서장 또는 관리자 서명 및 일련번호가 부여된 「확인서」를 사용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
- 2) 출입·검사·수거 등을 위해 위생용품관련업체 현장방문 시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이 기록된 관련서류를 영업소 관계자에게 제시 및 기관장(부서장) 명의의 “협조서한문”을 교부하고 업체의 책임자가 확인, 서명한 수령증을 회수 받아 복명서(점검표 등)에 첨부

라. 행정사항

- 1) 지방식약청 및 각 시·도(시·군·구)는 「확인서」를 인쇄하여 사용
- 2) 「확인서」에 부서장 또는 관리자 서명(사인, 도장, 철인 등)을 실시
- 3) 관련 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확인서」를 관리하고 파손되거나 훼손된 「확인서」가 있는 경우 그 경유를 조사·기록토록 조치
- 4) 지방식약청 및 시·도(시·군·구)는 <붙임1>의 『위생용품 위생관리 업무수행 시 제시 서류(예시)』 및 <붙임 2>의 『협조서한문(예시)』를 참조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게 제작·사용

■ 출입·검사·수거 등 안내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의 위해방지 및 위생관리 등을 위해 출입·검사·수거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목적

위생용품수입업체 특별기획 단속

2. 조사기간 및 대상

- 2020. 00. 00. ~ 00. 00.(0일간)
- 원료 사용이 많아 원료를 야적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 위생용품 관리법령 위반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원료관리, 자가품질검사, 위생적 취급기준 등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000, 000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5. 조사 대상 자료의 목록

-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입신고서
- 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일지, 제품 거래기록서류 등

6. 조사 관계 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 ※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필요시 기재

■ 압류·폐기처분 등 안내 ■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위해위생용품 등을 압류·폐기조치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압류·폐기의 목적

- (예시) 위해위생용품의 압류·폐기를 통한 유통·판매금지로 소비자 보호

2. 압류·폐기의 대상 및 기간

- 2020. 00. 00.
- 업체명 : 000위생용품(00시 00구 000로 000)

3. 압류·폐기 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홍길동, 000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4. 압류·폐기 대상 제품에 관한 사항

- 제품명 : 0000 (제조일자 : 2018.00.00)
- 압류·폐기사유 : 기준 및 규격 위반 제품 제조판매
- 기준 : 형광증백제 불검출, 결과 : 검출

5. 압류·폐기 관계 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폐기처분 등)
※ 압류·폐기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필요시 기재

■ 영업소 폐쇄조치 등 안내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것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조치 등을 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목적

- 소비자 보호 및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무신고 업소 폐쇄조치

2. 조사기간 및 대상

- 2020. 00. 00.
- 업체명 : 000위생용품(00시 00구 000로 000)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시물의 제거·삭제,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조치 등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000, 000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5. 조사 관계 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9조(폐쇄조치 등)
 - ※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손상시킨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필요시 기재

■ 협 조 서 한 문(예시) ■

우수·안전위생용품 생산과 위생용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업체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약처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CLEAN 식약처』 실천운동을 전 직원의 참여하에 전개하고 있으며, 민원업무 처리나 업소 지도단속 업무시 어떤 명목으로도 업소나 직무와 관련된 자료부터 차량편의, 식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기로 결의하고 그 실천의지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귀 업체에 출장 중인 식약처의 공무원이나 동행한 관계자가 부조리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가 있을 때는 다음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로 보장하겠으며 향후 민원처리에 있어 추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국민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
- ☞ 식약처 위생용품·담배관리팀(TEL 043-719-1701, FAX 043-719-1710)

2020.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서명)

(서 명)

협조서한문 수령증

◦ 수령일자 :

◦ 수 령 자 : [업소명] [직위] [성명]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붙임3> 확인서 서식

발급(일련)번호:	호
-----------	---

부서장	(서명)
-----	------

확 인 서

업종		영업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본인은 상기 업소의 (으)로서 위의 장소에서 영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 년 월 일 시경 의해 다음 사항이 적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 음

확 인 자 : 주소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1. 수입 위생용품 검사

가. 법적근거

- 1)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
- 2)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 3)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부터 제14조 및 [별표3]

나. 검사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수입신고된 위생용품*

- * 위생용품: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포크·ナイフ·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 티슈

다. 검사의 종류 및 대상

1) 서류검사 및 대상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3 1. 가.)

가) 수입신고용도가 자사제품의 원료용, 연구·조사용, 외화획득용에 해당하는 경우

- * 자사제품 원료: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위생용품

나) 동일사 동일 수입위생용품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 재수입한 경우

(1) 세척제, 헹굼보조제: 제품명,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원료명 및 배합비율이 같은 것

(2)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제품명,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원료명이 같은 것

(3)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ナイ프·빨대: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색상(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한한다)이 같은 것

(4) 일회용 이쑤시개 :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색상(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한한다)이 같은 것

(5)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한 제품 :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원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것

다)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위생용품(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지정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라)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에 전시(소비자·관람자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위생용품

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위생용품 중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위생용품 또는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사유가 위생용품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위생용품

바)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수입 위생용품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위생용품

2) 현장검사 및 대상

제품의 성질·상태·색깔·냄새·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를 포함(「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3 1. 나.)

가) 서류검사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위생용품

나)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 안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 그 물량이 ‘기준 및 규격의 검사’에 필요한 수거량의

10배 이하인 수입 위생용품

3) 정밀검사 및 대상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3 1. 다.)

가) 최초로 수입하는 위생용품

나)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수입 위생용품

다)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재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수입위생용품(정밀검사 5회 실시)

(1)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위생용품: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정밀검사 대상을 정하여 실시

(2)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되는 위생용품: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실시

라) 부적합 제품의 반송·반출·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한 용도와 달리 사용(다른 용도로 전환)한 영업자가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위생용품

마) 국내외 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바)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위생용품 중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위생용품 또는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사유가 위생용품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에 해당하는 위생용품

사) 현장검사(이하 “현장검사” 라 한다) 결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 위생용품

4) 무작위표본검사 및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3 1. 라.)

가) 정밀검사를 받은 위생용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 위생

용품 중 위생용품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 위생용품

나)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라. 검사 지시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철저 등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정보 등에 따라 검사 지시한 품목에 대하여 지방
식약청장은 철저한 검사를 실시할 것
- 2) 수입 위생용품의 신속하고 원활한 유통 추적조사를 위하여 수입신고 시 여러
제조일자(또는 유통기한)가 혼재된 제품의 경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 3쪽에 모든 제조일자(또는 유통
기한)별 수량, 중량, 금액을 기재토록 관리
- 3) 지방식약청장은 수입위생용품 전산망 품목입력에 철저를 기하고 코드 등을
입력할 경우 누락되거나 오기되지 않도록 할 것
- 4)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관련 [별표 3] 제2호마목에 따라 지방식약청
장은 수입신고 받은 수입 위생용품이 법 제11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12조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할 것

마. 현장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활성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관련 [별표 3] 1.나.1) 및 라.2)에 따라 지방식
약청장은 현장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바. 수입 검사시 유의사항

- 1) 서류검사 시 유의사항: 수입신고 용도에 따른 관련 서류 제출 확인
 - 가) 외화획득용: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 포함)
 - 나) 연구조사용: 연구·조사계획서(제조방법설명서, 연구·조사기간, 성분배합비

을 등 포함)

다) 수출 반송 위생용품: 반송 사유서

라) 영업신고증 사본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거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단, 담당 공무원이 위생용품 수입업 등에 대한 기록의 작성·관리 등을 위해 식약처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서류는 반려함.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반려된 위생용품 중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는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신고 할 수 있음.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생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함.

3) 국외제조업소 및 수출업소의 주소란에는 실제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제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함.

4)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며 다만, 이를 이유로 하여 검사가 완료된 위생용품에 대해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됨.

5) 보세구역 등에서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

6) 검체의 채취 및 취급은 지방청장이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물품의 관리자의 참여 하에 관계 공무원 등을 통해 실시함. 단, 필요시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참여 가능

7) 검체의 채취량은 위생용품 시행규칙 별표 6의 수거량에 따름. 단, 검체의 채취로 인한 오염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검체의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 가능.(포장단위로 채취한 중량으로 수거증 발급)

* 1회용 기저귀: 1kg, 그 외 위생용품: 300g(ml)

8) 수입 위생용품이 다른 수입제품과 섞여 있어 해당 수입 위생용품의 확인 및 수입량 파악을 할 수 없거나 대표성 있는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위 환경의 위험 등으로 검체를 수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수입 위생품을 검사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이송하게 하여 검체를 채취

9)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 시 신고제품(최초 수입제품, 서류검사)에 대한 현품 사진을 제출하도록 관리

가) (사진 제출 대상) 최초 수입제품, 서류검사 대상 제품

나) (사진 제출 범위)

(1) 제품 전면 사진

(2) 최소포장단위 주표시면(“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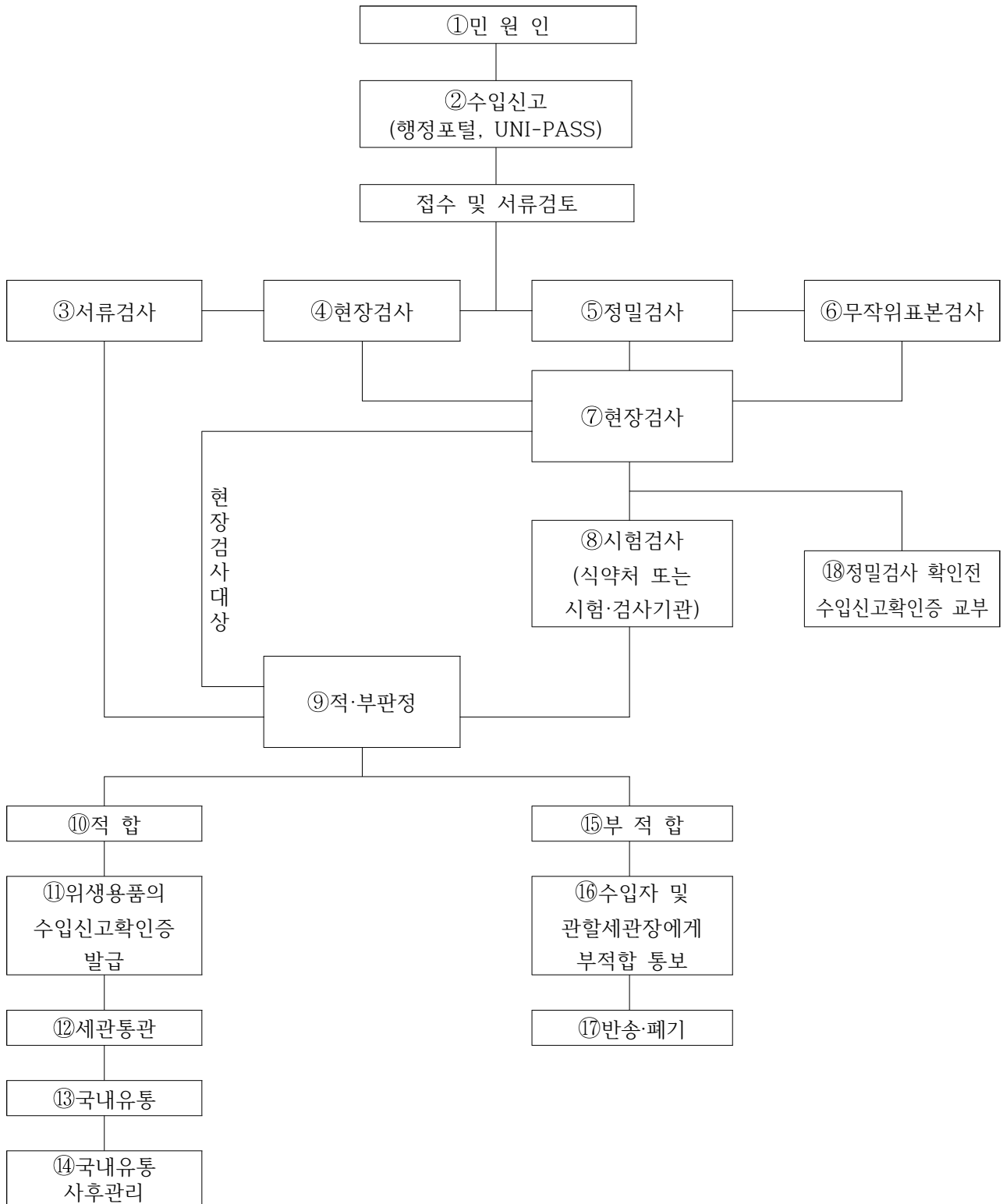
(3) 최소포장단위 정보표시면(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

(4) 한글표시사항 또는 현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

다) (사진 제출 면제 대상) 자사제품의 원료용·연구조사용·외화획득용 수입위생용품

<붙임 1>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리 절차



※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4조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리 절차

- ① **민원인**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를 득하고 수입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 ②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서 제출** : 「위생용품 관리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
(위생용품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 수입신고할 수 있음)
- ③ **서류검사 대상(처리기간 : 2일)**
 - 신고서류(한글표시 포함)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 대 상 : 외화획득용(관광용 제외)·자사제품 제조용·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위생용품, 동일사동일 수입위생용품 등
- ④ **현장검사 대상(처리기간 : 3일)**
 - 제품의 성질·상태·색깔·냄새·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를 포함
 - 대 상 : 서류검사 대상 중 지방청장이 현장검사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수입 위생용품 등
- ⑤ **정밀검사 대상(처리기간 : 10일)**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
 - 대 상 : 최초로 수입하는 위생용품, 국내외에서 문제 제기된 위생용품 등
- ⑥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처리기간 : 5일, 단, 진균수시험대상 10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
 - 대 상 : 정밀검사를 받은 위생용품 등, 지방식약청장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등
- ⑦ **현장검사**
 - 보관창고 등 현장에 출장하여 현장검사요령에 따라 실시
 - 수거량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실시
 - 시료채취는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검체의 채취 및 취급 방법에 따라 실시
- ⑧ **정밀검사**
 -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검사

⑨ 적·부 판정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판정

⑩ 적 합 : 「위생용품 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으로 적합

⑪ 신고확인증 발급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⑫ 세관통관 : 관세 납부 후 내국 물품화

⑬ 국내유통 : 수입위생용품을 제조·가공·판매 등으로 활용

⑭ 국내유통 사후관리 :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

⑮ 부적합 : 「위생용품 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위생용품으로 부적합

⑯ 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 관할 세관장 통보 시 보세구역 운영자로 하여금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내용 포함

⑰ 반송 및 폐기 등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리

⑱ 정밀검사 확인 전 수입신고확인증 교부(조건부)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위생용품

2. 수입 위생용품 신속통관 제도

가. 법적근거

- 1)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 2) 수입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

나. 조건부 신고수리제 운영

1) 대상

- 가) 원료의 수급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위생용품
- 나) 표시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
 - (1)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
 - (2) 수출국에서 표시한 제품명, 업체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유통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
 - (3)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의 경우

※ 조건부신고수리 신청 제한 적용

- 수입신고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자가 수입하는 위생용품
- 최근 2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위생용품
- 위생용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위생용품

2) 조건부 신고수리 처리 절차

- 가) 각 지방청은 상기 조건부신고수리 대상 위생용품에 대해 수입신고인이 보세창고에서의 출고예정일,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사항(작업 또는 입고예정일,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작업 또는 보관책임자)이 포함된 제출 서류를 확인 후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함.

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후 지체 없이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서류를 보내 사후관리 요청을 함

- ※ 사후관리 내용: ① 입고사실 확인
② 압류(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③ 보완사항 이행여부 확인
④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 조건의 이행여부 확인과 관련된 조치

3. 부적합 수입 위생용품 관리

가. 법적근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부적합한 위생용품의 조치 절차

1)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 통보

- (통보 내용) 검사대상 제품명, 검사항목과 그 기준 및 규격, 검사항목별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한 처리 절차,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 [부적합통보서] 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1호서식의 [거부처분 이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발송

2) 부적합 위생용품의 조치사항

가)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게 위생용품이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정밀검사 대상 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통지

나) 통관단계 부적합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반송·폐기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 전산망(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 확인하고 최종 처리 결과를 수입위생용품 전산망에 입력함.

4.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 사후관리

가. 법적근거

- 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2)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나. 유통관리대상 위생용품

- 1) 자사제품 제조용 위생용품
- 2)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위생용품
- 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제외
-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생용품

나. 행정사항

- 1) 유통관리 대상 위생용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청은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유통관리를 요청하여야 함.
* 자사제품 제조용이거나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경우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음.
- 2) 지방청으로부터 유통관리대상 위생품을 통보받은 관할 기관은 해당 위생용품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
* 위반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
- 3) 외화획득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통관리를 요청받은 영업자 소재지 관할 지방청은 해당 영업자가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위생품을 수출하였다는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별표 1]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1	1,3-이아미노메틸시클로헥산	1,3-bis(aminomethyl)cyclohexane	2, 3
2	1-히드록시에틸-1-벤질-2-운데실이미다졸리움 클로라이드	1-Hydroxyethyl-1-Benzyl-2-Undecylimidazolium Chloride	3
3	1-히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포린산	1-Hydroxy ethylidene-1,1-diphosphonic acid	2, 3
4	2,4,7,9-테트라메틸-5-데킨-4,7-디올	2,4,7,9-Tetra methyl-5-decyne-4,7-diol	3
5	2-디메틸아미노에틸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 폴리머 (1,2-프로판디올 모노-2-프로페노에이트, 2-히드록시-1,2,3-프로판트리카르복시레이트 포함)	2-(Dimethylamino)eth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1,2-propanediol mono-2-propenoate, 2-hydroxy-1,2,3-propanetricarboxylate	2, 3
6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2-Amino-2-methyl-1-propanol	2*, 3
7	2-포스포노-부탄-1,2,4-트리카르복실산	2-phosphono butane-1,2,4-tricarboxylic acid	3
8	개미산	Formic acid	1, 2, 3
9	과붕산나트륨	Sodium perborate	2*, 3
10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3
11	과산화요소	Urea Peroxide	1, 2, 3
12	과탄산나트륨	Sodium percarbonate	2, 3
13	구연산	Citric acid	1, 2, 3
14	구연산나트륨	Sodium citrate	1, 2, 3
15	구연산나트륨이수화물	Sodium citrate, dihydrate	1, 2, 3
16	규산나트륨	Sodium silicate	1, 2, 3
17	규산마그네슘	Magnesium silicate	1, 2, 3
18	규산칼륨	Potassium silicate	1, 2, 3
19	글루코스 아미드	Glucose amide	2, 3
20	글루코헵토산나트륨	Sodium glucoheptonate	2, 3
21	글루콘산	Gluconic acid	1,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22	글루콘산나트륨	Sodium gluconate	1, 2, 3
23	글리세린	Glycerin	1, 2, 3
24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Glycerin fatty acid ester	1, 2, 3
25	글리세릴폴리옥시에틸에테르	Glyceryl polyoxyethylether	2, 3
26	녹차추출물	Green Tea Ext.	1, 2, 3
27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삼나트륨	Trisodium nitrilotriacetate	2*, 3
28	데나토늄벤조에이트	Denatoniumbenzoate	2,3
29	데카노인산	Decanoic acid	2, 3
30	데히드로초산나트륨	Sodium dehydroacetate	1, 2, 3
31	디메틸설폭사이드	Dimethyl sulfoxide	2, 3
32	디메틸올-5,5-디메틸히단토인	Dimethylol-5,5-dimethylhydantoin	2, 3
33	디부틸 히드록시 톨루엔	2,6-di-t-butyl-4-methylphenol	1, 2, 3
34	디에탄올아민	Diethanolamine	2, 3
35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2, 3
36	디에틸렌삼아민오아세트산 오나트륨염	Penta sodium salt of Diethylene Triamine Penta Acetic Acid	2, 3
37	디에틸렌트리아민 펜타메틸렌포스포네이트	Diethylenetriamine pentamethylene phosphonate	1, 2, 3
38	디카르복실산	Dicarboxylic acid(C4-6)	1, 2, 3
39	디클로이소시아눌산나트륨	Sodium dichloroisocyanurate	2, 3
40	디클로로이소시아눌산칼륨	Potassium dichloroisocyanurate	3
41	디클로로-s-트리아진트리온	Dichloro-s-triazinetrione	3
42	디클로산	Dichlosan	2, 3
43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에테르	Dipropylene glycol methylether	2, 3
44	라우라미도프로필아민 옥시드	Lauramidopropylamine oxide	2, 3
45	라우릴 미리스틴모노에탄올아미드	Lauryl myristin monoethanolamide	2, 3
46	라우릴 에테르 에톡시 설페이트 나트륨	Sodium Lauryl Ether ethoxy sulfate	1, 2, 3
47	라우릴 에테르 황산나트륨	Sodium Lauryl Ether Sulfate	1, 2, 3
48	라우릴 염화 피코릴레움	Lauryl Picolineum Chloride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49	라우릴 폴리글루코사이드	Lauryl Polyglucoside (Vegetable oil ext.)	2, 3
50	라우릴 황산나트륨	Sodium lauryl sulfate	2, 3
51	리그노술폰산나트륨	Sodium lignosulfonate	3
52	말레인산	Maleic acid	1, 2, 3
53	말레인산아크릴산공중합체 염화물	Maleic acid, acrylic acid copolymer of sodium salt	2, 3
54	메타규산나트륨	Sodium metasilicate	1, 2, 3
55	메타중아황산나트륨	Sodium metabisulfite	1, 2, 3
56	메탄술폰산	Methanesulfonic acid	3
57	메틸글리신디초산나트륨	Sodium methylglycinediacetate	2, 3
58	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sodium methylcellulose	1, 2, 3
59	메틸옥시란 중합체 옥시란 함유 모노헥실 에테르	Meth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 monohexyl ether	3
60	메틸옥시레인, 중합체함유 옥시레인 에테르 함유(1,2-에탄딜-디니트리로)테트라커스(프로판올)	Meth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 ether with(1,2-ethane diyldinitrilo)tetrakis(propanol)	2, 3
61	메틸파라벤	Methylparaben	1, 2, 3
62	모노과황산칼륨	Potassium monopersulfate	2, 3
63	모노디알킬인산에스테르	Mono-(di)alkyl phosphoric acid ester	2, 3
64	모노에탄올아민	Monoethanol amine	2, 3
65	무정형 착규산염	Amorphous complex silicate	2, 3
66	미리스틸디메틸아민옥사이드	Myristyldimethylamine oxide	1, 2, 3
67	벤조트리아졸	benzotriazol	2, 3
68	복숭아잎 추출물	Peach leaves fluid	2, 3
79	부톡시에톡시 초산나트륨	Sodium butoxyethoxy acetate	3
70	붕산	Boric acid	1, 2, 3
71	브로노폴	Bronopol	2, 3
72	산성피로인산나트륨	Disodium dihydrogen pyrophosphate	1, 2, 3
73	산화마그네슘	Magnesium oxide	1, 2, 3
74	살구추출물	Apricot HS ext.	1, 2, 3
75	설파민산	Sulfamic acid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76	소르빈산칼륨	Potassium sorbate	1, 2, 3
77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1, 2, 3
78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2, 3
79	수소첨가피마자유	PEG-40 Hydrogenated Castor Oil	2, 3
80	스티렌/아크릴 중합체	Styrene/Acrylates Copolymer	2, 3
81	스티렌/아크릴산 암모늄 공중합체	Styrene/Acrylic acid polymer, ammonium salt	2, 3
82	아민폴리글리콜콘덴세이트	Aminepolyglycol condensate	3
83	아밀라아제	Amylase	2, 3
84	안식향 추출물	Benzoin Extract	1, 2, 3
85	안식향산나트륨	Sodium benzoate	1, 2, 3
86	알로에 에센스	Aloe essence	1, 2, 3
87	알로에베라 젤	Aloe vera gel	1, 2, 3
88	알로에추출물	Aloe Ext.	1, 2, 3
89	알루미늄산 나트륨	Sodium aluminate	2, 3
90	알루미늄산실리콘	Silicone aluminate	2, 3
91	알카놀아민	Alkanol amine	2, 3
92	알칸술폰산나트륨	Sodium alkansulfonate	2, 3
93	알코올알콕시레이트	Alcohol alkoxyate	2, 3
94	알킬글루코시드	Alkyl glucoside	1, 2, 3
95	알킬벤젠설포네이트	Alkylbenzene sulfonate	1, 2, 3
96	알킬(C12-C15)에테르 황산암모늄	Ammonium C12-15 parath sulfate	2, 3
97	알킬폴리글루코시드	Alkylpolyglucoside	1, 2, 3
98	알킬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옥시 프로필렌 글리콜 에테르	Alkyl polyethylene glycol polyoxypropylene glycol ether	2, 3
99	알킬(C12-C18)폴리에틸렌글리콜 (3EO-8EO)폴리프로필렌글리콜 (8PO)에테르	Alkyl(C12-C18) polyethyleneglycol(3EO-8EO) polypropyleneglycol(8PO)ether	2, 3
100	알킬디메틸 벤질염화암모늄	Alkyl dim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2, 3
101	알킬디메틸베타인	Alkyl dimethyl betaine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102	알킬디메틸아민옥사이드	Alkyl dimethyl amine oxide	1, 2, 3
103	알킬메틸에틸벤질염화암모늄	Alkylmethyl 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2, 3
104	알킬벤젠설폰산	Alkylbenzene sulfonic acid	1, 2, 3
105	알킬에톡시나트륨	Sodium alkyl ethoxylate	2, 3
106	알킬폴리에틸렌 글리콜	Alkyl(C12-C18) polyethylene glycol	2, 3
107	알파 술포 메틸 코코넛 나트륨	Alpha Sulfo Methyl Coconut Sodium salt (Coconut Oil Ext.)	2, 3
108	암모니아수	Ammonium hydroxide	2, 3
109	에스테라아제	Esterase	2, 3
110	에탄올	Ethanol	1, 2, 3
111	에톡시레이티드 지방알콜	Ethoxylated Fatty Alcohol	2, 3
112	에틸렌글리콜	ethyleneglycol	2, 3
113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2, 3
114	염산	Hydrochloric Acid	2, 3
115	염화나트륨	Sodium chloride	1, 2, 3
116	염화디데실메틸암모늄	Didecyl methyl ammonium chloride	2, 3
117	염화디알킬 디메틸 암모늄염	Dialk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2, 3
118	염화마그네슘	Magnesium chloride	1, 2, 3
119	염화아연	Zinc chloride	2, 3
120	염화암모늄	Ammonium chloride	1, 2, 3
121	염화칼슘	Calcium chloride	1, 2, 3
122	오이추출물	Cucumber Ext.	1, 2, 3
123	옥사반-A	Oxaban-A	2, 3
124	옥타노익산	Octanoic Acid	2, 3
125	옥탄설폰산 나트륨	Sodium octane sulfonate	2, 3
126	옥탄포스포닉산	Octanephosphonic acid	2, 3
127	옥틸황산염나트륨	Sodium octyl sulfate	2, 3
128	올레인산	Oleic acid	1, 2, 3
129	요소	Urea	1, 2, 3
130	요오드	Iodine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131	요오드칼륨	Potassium iodide	1, 2, 3
132	은	Silver	3
133	이디티에이 2나트륨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disodium salt(EDTA-2Na)	1, 2, 3
134	이디티에이 3나트륨	Ethylenediamine tetra acetic acid, trisodium salt(EDTA-3Na)	1, 2, 3
135	이디티에이 4나트륨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tetrasodium salt(EDTA-4Na)	1, 2, 3
136	이소프로필알콜	Isopropyl alcohol	2, 3
137	이차 알칸 술포네이트	Secondary alkane sulfonate	2, 3
138	인산 1-헥사데카놀	1-Hexadecanol phosphate	2, 3
139	인산아미노트리메틸렌	Aminotrimethylene phosphate	2, 3
140	인산에스테르	phosphoric acid ester	1, 2, 3
141	자당지방산에스테르	Sucrose fatty acid ester	1, 2, 3
142	제라니올	Geraniol(3,7-dimethyl-trans-2,6-octadien-1-ol)	1, 2, 3
143	제사 코코 알킬아민 에톡실레이트	Quaternary coco alkylamine ethoxylate	3
144	제삼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 tribasic	1, 2, 3
145	제이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Dibasic	1, 2, 3
146	제일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 monobasic	1, 2, 3
147	중규산나트륨	Sodium disilicate	2, 3
148	지방산 탈로우	Tallow fatty acid	1, 2, 3
149	지방산, 이소노네인, 3,5,5-트리메틸헥사놀산	Fatty acid, Isononane, 3,5,5-Trimethylhexanoic acid	3
150	지방산코코넛	Coconut fatty acid	1, 2, 3
151	지방산폴리글리세롤에테르	Polyglycerol fatty acid ether	2, 3
152	질산	Nitric acid	3
153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2, 3
154	차아염소산칼슘	Calcium hypochlorite	3
155	초산	Acetic acid	1, 2, 3
156	초산나트륨	Sodium acetate	1, 2, 3
157	카라멜	Caramel	1,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158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Sodium carboxy methylcellulose	1, 2, 3
159	카르복실산 나트륨	Sodium carboxylate	2, 3
160	카보닐히드롤라아제	Carbonyl hydrolases	2, 3
161	칼슘디소듐 에틸렌 디아민테트라 아세테이트	Calcium disodium ethylene diaminetetra acetate	2, 3
162	코코넛 디에탄올아미드	Coconut fatty acid diethanolamide	1, 2, 3
163	코코넛아미도 프로필 베타인	Cocoamidopropyl betaine	1, 2, 3
164	코코아모카르복시 글리시네이트	Cocoamphocarboxy glycinate	3
165	코코아미도 프로필아민 산화물	Cocamidopropyl amine oxide	3
166	코코아미드 디에탄올아민	Cocamide diethanolamine	2, 3
167	퀴놀린 옐로우	Quinolin Yellow	2, 3
168	큐멘설포산 나트륨	Sodium cumene sulfonate	2, 3
169	큐멘설포산 지방알콜	Cumen sulfonate fatty alcohol	2, 3
170	클로로헥시딘 디글루콘산염	Chlorohexidine digluconate	3
171	키실렌설포산나트륨	Sodium xylene sulfonate	2, 3
172	키실렌설포산칼슘	Calcium xylene sulfonate	2, 3
173	탄산나트륨	Sodium carbonate	1, 2, 3
174	탄산수소나트륨	Sodium hydrogen carbonate, sodium bicarbonate	1, 2, 3
175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1, 2, 3
176	테트라아세틸렌디아민	Tetraacetylene diamine(TAED)	2*, 3
177	톨루엔 술폰산	toluene sulfonic acid	2, 3
178	톨루엔 술폰산 나트륨	Sodium toluene sulfonate	2, 3
179	톨루엔 술폰산 칼륨	Potassium toluene sulfonate	2, 3
180	트리에탄올아민	Triethanol amine	2, 3
181	트리에틸렌글리콜	Triethylene glycol	2, 3
182	트리클로산	Triclosan	2, 3
183	트리클로카반	Triclocarban	2, 3
184	삼인산나트륨	Sodium triphosphate	1, 2, 3
185	트리폴리인산나트륨	Sodium tripolyphosphate	1,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186	파라옥시안식향산 부틸	Butyl-p-hydroxybenzoate	1, 2, 3
187	파라옥시안식향산 에틸	Ethyl-p-hydroxybenzoate	1, 2, 3
188	파라옥시안식향산 이소부틸	Isobutyl-p-hydroxybenzoate	1, 2, 3
189	파라옥시안식향산 이소프로필	Isopropyl-p-hydroxybenzoate	1, 2, 3
190	파라핀 오일	Paraffine oil	1, 2, 3
191	파라핀 왁스	paraffin wax	1, 2, 3
192	파인오일	Pine oil	1, 2, 3
193	패각소성칼슘		1, 2, 3
194	페이턴트블루 V	Patent blue V	2, 3
195	펜타소듐디에틸렌트리아민 펜타아세테이트	Pentasodium diethylenetriaminepentaacetate	2, 3
196	펜타아민아세토코발트 질산염	Penta Amine Acetato Cobalt III Nitrate	3
197	포스포노폴리카르복실산	Phosphino polycarboxylic acid	2, 3
198	폴리디메틸실록산	Polydimethyl siloxane	2, 3
199	폴리디메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 이트	Polydimethyl amino ethyl methacrylate	2, 3
200	폴리소르베이트 20	Polyoxyethylene(20) sorbitan monolaurate	1, 2, 3
201	폴리소르베이트 80	Polyoxyethylene(80) sorbitan monooleate	1, 2, 3
202	폴리아크릴/이타코닉 코폴리머	Polyacryl/itaconic copolymer	2, 3
203	폴리아크릴산	Polyacrylic acid	2, 3
204	폴리아크릴산나트륨	Sodium polyacrylate	2, 3
205	폴리알킬렌 글리콜 에테르	Polyalkylene glycol ether	2, 3
206	폴리에톡시 폴리프로폭시 알터네이팅 콘덴세이트	Polyethoxy polypropoxy alternating condensate	2, 3
207	폴리에톡시 폴리프로폭시 알터네이팅 콘덴세이트 벤질레이트	Polyethoxy polypropoxy alternating condensate benzylate	2, 3
208	폴리에틸렌 글리콜	Polyethylene glycol	1, 2, 3
209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공중합물	Polyethylene polypropylene block copolymer	1, 2, 3
210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	Polyoxyalkylene alkyl ether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211	폴리옥시에틸렌 올레일에테르	Polyoxyethylene oleyl ether	2, 3
212	폴리옥시에틸렌알킬에테르	Polyoxyethylene alkyl ether	2, 3
213	폴리프로필렌글리콜	Polypropylene glycol	2, 3
214	표백분	Bleaching powder	3
215	프로테아제	Protease	2, 3
216	프로필렌 글리콜	Propylene glycol	1, 2, 3
217	프로필렌글리콜 1-메틸에테르	Propylene glycol 1-methyl ether	2, 3
218	피로인산칼륨	Potassium pyrophosphate	1, 2, 3
219	피마자유	Castor oil	1, 2, 3
220	헥사메타인산나트륨	Sodium hexametaphosphate	1, 2, 3
221	황산	sulfuric acid	2, 3
222	황산나트륨	Sodium Sulfate	2, 3
223	황산마그네슘	Magnesium sulfate	2, 3
224	황삼산화물	Sulfur trioxide	2, 3
225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	Hydroxy ethylcellulose	2, 3
226	C12-14선형 글루코스아미드	C12-14 Linear glucose amide	2, 3
227	C12-15-옥소알콜에톡시레이티드 프로폭시레이티드	C12-15-Oxoalcohol ethoxylate propoxylate	2, 3
228	D-글루코스데실옥틸에테르	D-glucose decyloctyl ether	2, 3
229	PCA나트륨	Sodium PCA	2, 3
230	α-라우릴-오메가-하이드록시폴리 (옥시에틸렌)	α-Lauryl-omega-hydroxypoly(oxyethylene)	1, 2, 3
231	α-올레핀설포산나트륨	α-olefin sulfonate(AOS)	1, 2, 3
232	알카린 프로테아제	Alkaline Protease	2, 3
<색 소>			
1	식용색소 녹색 제3호	Fast green FCF	1, 2, 3
2	녹색 201호	Alizarine Cyanine Green F	2, 3
3	녹색 202호	Quinizarine green SS	2, 3
4	녹색 204호	Pyranine Conc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5	녹색 2호	Light green SF yellowish	2, 3
6	녹색 401호	Naphthol green B	2, 3
7	녹색 402호	Guinea green B	2, 3
8	식용색소 적색 제2호	Amaranth	1, 2, 3
9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Alura red(Food Red 40)	1, 2, 3
10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	New Coccin(or Ponceau 4R)	1, 2, 3
11	적색 103호의 (1)	Eosine YS	2, 3
12	적색 104호의 (1)	Phloxine B	2, 3
13	적색 104호의 (2)	Phloxine BK	2, 3
14	적색 105호의 (1)	Rose bengal	2, 3
15	적색 105호의 (2)	Rose bengal K	2, 3
16	적색 106호	Acid Red	2, 3
17	적색 201호	Lithol Rubine B	2, 3
18	적색 202호	Lithol Rubine BCA	2, 3
19	적색 203호	Lake red C	2, 3
20	적색 204호	Lake red CBA	2, 3
21	적색 205호	Lithol red	2, 3
22	적색 206호	Lithol red CA	2, 3
23	적색 207호	Lithol red BA	2, 3
24	적색 208호	Lithol red SR	2, 3
25	적색 213호	Rhodamine B	2, 3
26	적색 214호	Rhodamine B Acetate	2, 3
27	적색 215호	Rhodamine B Stearate	2, 3
28	적색 218호	Tetrachlorotetrabromofluorescein	2, 3
29	적색 219호	Brilliant lake red R	2, 3
30	적색 220호	Deep Maroon	2, 3
31	적색 221호	Toluidine red	2, 3
32	적색 223호	Tetrabromofluorescein	2, 3
33	적색 225호	Sudan III	2, 3
34	적색 226호	Helindon Pink CN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35	적색 227호	Fast Acid magenta	2, 3
36	적색 228호	Permaton red	2, 3
37	적색 230호의 (2)	Eosine SK	2, 3
38	적색 401호	Violamine R	2, 3
39	적색 404호	Brilliant fast scarlet	2, 3
40	적색 405호	Parmanent red F5R	2, 3
41	적색 503호	Ponceau R	2, 3
42	적색 504호	Ponceau SX	2, 3
43	적색 506호	Fast red S	2, 3
44	식용색소청색 제1호	Brilliant blue FCF	1, 2, 3
45	식용색소 청색 제2호	Indigocarmine	1, 2, 3
46	청색 201호	Indigo	2, 3
47	청색 202호	Patent blue NA	2, 3
48	청색 203호	Patent blue CA	2, 3
49	청색 204호	Carbanthrene blue	2, 3
50	청색 205호	Alphazurine FG	2, 3
51	청색 403호	Sudan blue B	2, 3
52	청색 404호	Phthalocyanine blue	2, 3
53	식용색소 황색4호	Tartrazine	1, 2, 3
54	식용색소 황색5호	Sunset yellow FCF	1, 2, 3
55	황색 201호	Fluorescein	2, 3
56	황색 202호의 (1)	Uranine	2, 3
57	황색 202호의 (2)	Uranine K	2, 3
58	황색 203호	Quinoline yellow WS	2, 3
59	황색 204호	Quinoline yellow SS	2, 3
60	황색 205호	Benzidine yellow G	2, 3
61	황색 401호	Hanza yellow	2, 3
62	황색 403호의 (1)	Naphthol yellow S	2, 3
63	황색 407호	Fast Light yellow 3G	2, 3
64	등색 201호	Dibromofluorescein	2, 3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구분(종)
65	등색 203호	Permanent orange	2, 3
66	등색 204호	Benzidine orange G	2, 3
67	등색 205호	Orange II	2, 3
68	등색 206호	Diiodofluorescein	2, 3
69	등색 207호	Erythrosine yellowish NA	2, 3
70	등색 402호	Orange I	2, 3
71	자색 201호	Alizurine purple SS	2, 3
72	자색 401호	Alizurol purple	2, 3
73	갈색 201호	Resorcin Brown	2, 3
74	흑색 401호	Naphthol blue black	2, 3
<향 료>			
1	구연산 향료	Citrus fragrance	1, 2, 3
2	레몬향	Perfume, Lemon flavor	1, 2, 3
3	사과향	Apple fragrance	1, 2, 3
4	스위트 오렌지 오일	Sweet orange oil	1, 2, 3
5	시트랄	Citral (3,7-dimethyl-2,6-octadienol)	2, 3
6	오렌지엡센스(오렌지향)	Orange essence (Orange fragrance)	1, 2, 3
7	천연레몬오일	Natural lemon oil	1, 2, 3
8	텐시드향	Tensid flavor	2, 3
9	L-멘톨	L-menthol	1, 2, 3

* 2* : 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에 한정

○ 기타 세척제 사용가능원료 등의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 >위생용품 >위생용품안전관리 >품목제조
보고 원재료코드현황에서 확인가능**

[별표 2] 행굼보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사용농도
1	구연산	Citric acid	농도제한 없음
2	D-글루콘산나트륨	D-Gluconic acid, monosodium salt	760 ppm 이하
3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0.3 ppm이하
4	α-라우로일-ω-하이드록시 폴리(옥시에틸렌)	α-Lauroyl-ω-hydroxypoly(oxyethylene) with an average of 8-9 moles ethylene oxid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400	농도제한 없음
5	2-메틸-2,4-펜탄디올	2,4-Pentanediol, 2-methyl-	농도제한 없음
6	2-부톡시-에탄올	2-butoxy-ethanol	농도제한 없음
7	붕산나트륨	Boric acid, sodium salt	농도제한 없음
8	알킬(C ₁₂₋₁₅)폴리에틸렌글리콜	Linear alcohol 12-13mole ethoxylate (Alkyl(C ₁₂₋₁₅)polyethyleneglycol)	7.14 ppm
9	α-알킬(C _{11-C15})-ω-하이드록시폴리 (옥시에틸렌)	α-Alkyl(C _{11-C15})-ω-hydroxypoly(oxyethylene) with ethylene oxide content 9 to 13moles, 18moles	농도제한 없음
10	α-알킬(C _{10-C14})-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α-Alkyl(C _{10-C14})-ω-hydroxy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	농도제한 없음
11	α-알킬(C _{12-C15})-ω-하이드록시폴리 (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α-Alkyl(C _{12-C15})-ω-hydroxy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965	농도제한 없음
12	α-알킬(C _{12-C18})-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α-Alkyl(C _{12-C18})-ω-hydroxy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	농도제한 없음
13	에탄올	Ethanol	농도제한 없음
14	2-(2-에톡시에톡시)에탄올	Ethanol, 2-(2-ethoxyethoxy)-	농도제한 없음
15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EDTA), tetrasodium salt	농도제한 없음
16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이나트륨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EDTA), disodium salt	1,400 ppm 이하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사용농도
17	(에틸렌-프로필렌)폴리알킬렌글리콜	Alkyl(C ₁₂ -C ₁₅) monoether of mixed(ethylene-propylene) polyalkylene glycol, cloud point of 70-77 °C in 1%aqueous solution,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807	농도제한 없음
18	(에틸렌-프로필렌)폴리알킬렌글리콜부톡시모노에테르	Butoxy monoether of mixed (ethylene-propylene)polyalkylene glycol, cloudpoint of 90-100 °C in 0.5 aqueous solution,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3,300	농도제한 없음
19	옥시에틸렌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block,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1,900	농도제한 없음
20	옥시에틸렌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block, minimum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2,000	농도제한 없음
21	옥시에틸렌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block, 27 to 31 moles of polyoxypropylen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2,000	농도제한 없음
22	옥타데칸산칼슘	Octadecanoic acid, calcium salt (Calcium stearate)	16 ppm 이하
23	옥탄산	Octanoic acid	52 ppm 이하
24	1-옥탄설폰산나트륨	1-Octanesulfonic acid, sodium salt	46 ppm 이하
25	옥틸황산염나트륨	Sodium 2-ethylhexyl sulfate(Octyl sodium sulfate)	20 ppm 이하
26	요소	Urea	농도제한 없음
27	인산	Phosphoric acid	농도제한 없음
28	인산나트륨	Phosphoric acid, monosodium salt	350 ppm 이하
29	인산삼나트륨	Phosphoric acid, trisodium salt	5,916 ppm 이하
30	젖산	Lactic acid	138 ppm 이하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사용농도
31	초산	Acetic acid	290 ppm 이하
32	코코지방산칼륨	Fatty acids, coco, potassium salts	농도제한 없음
33	큐멘설포산나트륨	Cumene sulfonate, sodium salt	40 ppm 이하
34	n-클로로-4-메틸벤젠설포아미드나트륨	Benzene sulfonamide, n-chloro-4-methyl, sodium salt	농도제한 없음
35	키실렌설포산나트륨	Xylene sulfonate, sodium salt	40 ppm 이하
36	톨루엔설포산나트륨	Toluene sulfonate, sodium salt	40 ppm 이하
37	톨루엔설포산칼륨	Toluene sulfonate, potassium salt	40 ppm 이하
38	α,α-트리메틸-3-시클로헥산-1-메탄올	3-Cyclohexene-1-methanol,α,α,4-trimethyl-	농도제한 없음
39	폴리실록산베타인	Polybetaine polysiloxane copolymer	2.14 ppm
40	폴리알킬렌글리콜(에틸렌-프로필렌)부톡시모노에테르	Butoxy monoether of mixed (ethylene-propylene)polyalkylene glycol, minimum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2,400	농도제한 없음
41	폴리에틸렌 글리콜(400) 모노라우레이트	Polyethylene glycol(400) monolaurate	농도제한 없음
42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프로필렌글리콜, 모노부틸에테르	Polyethylene glycol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MW 2400-3500)	농도제한 없음
43	폴리에틸렌 글리콜/폴리프로필렌 글리콜 n-알킬 에테르, C ₁₂ -C ₁₅	PEG/PPG n-alkyl ether, C ₁₂ -C ₁₅	농도제한 없음
44	폴리(옥시-1,2-에탄디일), α-[(1,1,3,3-테트라메틸부틸), 페닐]-ω-하이드록시, 페놀 1분자와 4-14분자의 에틸렌옥사이드의 반응물)	Poly(oxy-1,2-ethanediyl), α-[(1,1,3,3- tetra methylbutyl)phenyl]-ω-hydroxy-, produced with one mole of the phenol and 4 to 14 moles ethylene oxide	농도제한 없음

순번	성분명(한글)	성분명(영문)	사용농도
45	폴리(옥시에틸렌)(1분자) α-알킬(C ₁₂ -C ₁₅)-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황산나트륨	Sodium-α-alkyl(C ₁₂ -C ₁₅)-ω-hydroxy poly(oxyethylene) sulfate with the poly(oxyethylene) content averaging one mole	농도제한 없음
46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minimum molecular weight(in amu), 1,900	112 ppm
47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머	Polyoxyethylenepolyoxypropylene block polymer(MW 2,800)	농도제한 없음

[별표 3]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 사용 가능한 화장품법에 따른 살균보존제 성분)

* 살균·보존제 성분

원 료 명	사 용 한 도	비 고
글루타랄(펜탄-1,5-디알)	0.1%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3-아세틸-6-메틸피란-2,4(3H)-디온) 및 그 염류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로서 0.6%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4,4-디메틸-1,3-옥사졸리딘(디메틸옥사졸리딘)	0.1%	
디브로모헥사미딘 및 그 염류(이세치오네이트 포함)	(다만, 제품의 pH는 6을 넘어야 함) 디브로모헥사미딘으로서 0.1%	
디아졸리디닐우레아 (N-(히드록시메틸)-N-(디히드록시메틸-1,3-디옥소-2,5-이미다졸리디닐-4)-N'-(히드록시메틸)우레아)	0.5%	
디엠디엠하이단토인 (1,3-비스(히드록시메틸)-5,5-디메틸이미다졸리딘-2,4-디온)	0.6%	
2, 4-디클로로벤질알코올	0.15%	
3, 4-디클로로벤질알코올	0.15%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1%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단,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	(단,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염화마그네슘과 질산마그네슘 포함)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3:1)혼합물로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3:1)혼합물로서)	
메텐아민(헥사메틸렌테트라아민)	0.15%	
무기설과이트 및 하이드로젠설과이트류	유리 SO ₂ 로 0.2%	

원 료 명	사 용 한 도	비 고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및 사카리네이트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로서 0.1% · 기타 제품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로서 0.05%	
벤제토늄클로라이드	0.1%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산으로서 0.5% (다만, 벤조익애씨드 및 그 소듐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산으로서 2.5%)	
벤질알코올	1% (다만, 염모용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벤질헤미포름알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5%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보레이트류(소듐보레이트, 테트라보레이트)	밀납, 백납의 유화의 목적으로 사용 시 0.76% (이 경우, 밀납·백납 배합량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목적에는 사용금지
5-브로모-5-나이트로-1,3-디옥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다만, 아민류나 아마이드류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2-브로모-2-나이트로프로판-1,3-디올(브로노폴)	0.1%	아민류나 아마이드류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브로모클로로펜(6,6-디브로모-4,4-디클로로-2,2'-메칠렌-디페놀)	0.1%	
비페닐-2-올(<i>o</i> -페닐페놀) 및 그 염류	페놀로서 0.15%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다만, 샴푸는 제외)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0.08%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허용	기타 제품에는 사

원 료 명	사 용 한 도	비 고
		용금지
소듐아이오데이트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기타 제품에는 사 용금지
소듐하이드록시메칠아미노아세테이트 (소듐하이드록시메칠글리시네이트)	0.5%	
소르빅애씨드(헥사-2,4-디에노익 애씨드) 및 그 염류	소르빅애씨드로서 0.6%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아이피비씨)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2% (목욕용제품, 샴푸젤류 및 샴푸 류를 제외하고는 3세 이하 어 린이 사용금지)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3세 이하 어린이 사용 금지) · 다만, 테오드란트에 배합할 경우에는 0.0075%(3세 이하 어 린이 사용금지)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 에어로졸(스 프레이에 한함) 제품, 바디로션 및 바디크림에는 사 용금지
알킬이소퀴놀리늄브로마이드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5%	
알킬(C ₁₂ -C ₂₂)트리메칠암모늄 브로 마이드 및 클로라이드(브롬화세 트리모늄 포함)	두발용 제품류를 제외한 화장 품에 0.1%	
에칠라우로일알지네이트 하이드로 클로라이드	0.4%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 및 에어로졸 (스프레이에 한 함) 제품에는 사 용금지
엠디엠하이단토인	0.2%	
알킬디아미노에칠글라이신하이드 로클로라이드용액(30%)	0.3%	
운데실레닉애씨드 및 그 염류 및 모노에탄올아마이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산으 로서 0.2%	기타 제품에는 사 용금지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3,3'-비스(1- 하이드록시메칠-2,5-디옥소이미다 졸리딘-4-일)-1,1'메칠렌디우레아)	0.6%	
이소프로필메칠페놀(이소프로필크	0.1%	

원 료 명	사 용 한 도	비 고
레졸, <i>o</i> -시멘-5-올)		
징크피리치온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5%	기타 제품에는 사 용금지
퀴터늄-15 (메텐아민 3-클로로알릴클로라이드)	0.2%	
클로로부탄올	0.5%	에어로졸(스프레 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삭제>	<삭제>	
클로로자이레놀	0.5%	
<i>p</i> -클로로- <i>m</i> -크레졸	0.2%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클로로펜(2-벤질-4-클로로페놀)	0.2%	
클로페네신(3-(<i>p</i> -클로로페녹시)- 프로판-1,2-디올)	0.3%	
클로헥시딘, 그 디글루코네이트, 디아세테이트 및 디하이드로클로 라이드	·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1%, · 기타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05%	
클림바졸[1-(4-클로로페녹시)-1-(1H- 이미다졸릴)-3, 3-디메틸-2-부타논]	두발용 제품에 0.5%	기타 제품에는 사 용금지
테트라브로모- <i>o</i> -크레졸	0.3%	
트리클로산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테오도런트(스프레이 제품 제외), 페이스파우더, 피부 결점을 감추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예:블레미 쉬컨실러)에 0.3%	기타 제품에는 사 용금지
트리클로카반(트리클로카바닐리드)	0.2% (다만, 원료 중 3,3',4,4'-테트라 클로로아조벤젠 1ppm 미만, 3,3',4,4'-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1ppm 미만 함유하여야 함)	
페녹시에탄올	1%	
페녹시이소프로판올(1-페녹시프로 판-2-올)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0%	기타 제품에는 사 용금지

원 료 명	사 용 한 도	비 고
<삭제>	<삭제>	
포믹애씨드 및 소듐포메이트	포믹애씨드로서 0.5%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 에이치씨엘	0.05%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프로피오닉애씨드 및 그 염류	프로피오닉애씨드로서 2%	
피록톤올아민(1-하이드록시-4-메칠-6(2,4,4-트리메칠펜틸)2-피리돈 및 그 모노에탄올아민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0%, 기타 제품에 0.5%	
피리딘-2-올 1-옥사이드	0.5%	
<i>p</i> -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테르류 (다만, 에스테르류 중 페닐은 제외)	· 단일성분일 경우 0.4%(산으로서) · 혼합사용의 경우 0.8%(산으로서)	
헥세티딘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헥사미딘(1,6-디(4-아미디노페녹시)- <i>n</i> -헥산) 및 그 염류(이세치오네이트 및 <i>p</i> -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헥사미딘으로서 0.1%	

* 염류의 예 :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에탄올아민,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베타인 등

* 에스테르류 : 메칠, 에칠, 프로필, 이소프로필, 부틸, 이소부틸, 페닐

[별표 4] 위생용품 담당부서 현황

1 시·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서울특별시청	질병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04524)	02-2133-7672 (02-768-8853)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47545)	051-888-3392 (051-888-3379)
대구광역시청	위생정책과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41911)	053-803-4111 (053-803-4959)
인천광역시청	위생안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21554)	032-440-2794 (032-440-8658)
광주광역시청	식품안전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61945)	062-613-4383 (062-613-4369)
대전광역시청	식품안전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35242)	042-270-4892 (042-270-4869)
울산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44675)	052-229-3541 (052-229-2829)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6444)	031-8008-3689 (031-8008-3699)
강원도청	식품의약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4266)	033-249-2428 (033-249-4099)
충북도청	식의약안전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28515)	043-220-3163 (043-220-3169)
충남도청	건강증진식품과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32255)	041-635-4331 (041-635-3063)
전북도청	건강안전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54968)	063-280-4671 (063-280-2479)
전남도청	식품의약과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58564)	061-286-5764 (061-286-4736)
경북도청	식품의약과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36759)	054-880-3840 (054-880-5750)
경남도청	식품의약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51154)	055-211-5013 (055-211-5019)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63122)	064-710-2943 (064-710-2919)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30151)	044-300-5734 (044-300-5719)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서울특별시청	질병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04524)	02-2133-7672 (02-768-8853)
종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36(03035)	02-2148-3543 (02-2148-5838)
중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9길 16(04611)	02-3396-5646 (02-3396-8892)
용산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4층(04390)	02-2199-8042 (02-2199-5810)
성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3길 10(04706)	02-2286-7150 (02-2286-7124)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05026)	02-450-1918 (02-3425-1714)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02565)	02-2127-5256 (02-3299-2641)
중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02043)	02-2094-0784 (02-490-4517)
성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02751)	02-2241-6183 (02-2241-6611)
강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897(01145)	02-901-7633 (02-901-7609)
도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3길 117(01395)	02-2091-4466 (02-2091-6380)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01689)	02-2116-4323 (02-2116-4645)
은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03384)	02-351-8182 (02-351-5681)
서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03718)	02-330-8478 (02-330-8987)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03937)	02-3153-9187 (02-3153-9199)
양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9(08095)	02-2620-4892 (02-2620-4409)
강서구 보건소	위생관리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61(07560)	02-2600-5831 (02-2620-0502)
구로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8길 66(08299)	02-860-2059 (02-860-2652)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08611)	02-2627-2637 (02-2251-1825)
영등포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07260)	02-2670-4704 (02-2670-4875)
동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06963)	02-820-9414 (02-820-1655)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관악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08832)	02-879-7281 (02-879-7853)
서초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06750)	02-2155-8028 (02-2155-8386)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06750)	02-2155-6322 (02-2155-6363)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06088)	02-3423-7083 (02-3423-8901)
송파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05552)	02-2147-3446 (02-2147-3895)
강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45(05397)	02-3425-6632 (02-3425-8603)

3 부산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47545)	051-888-3392 (051-888-3379)
중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48926)	051-600-4412 (051-600-4389)
서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49247)	051-240-4402 (051-240-4389)
동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48781)	051-440-4425 (051-440-4389)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49011)	051-419-4402 (051-419-4729)
부산진구청	관광위생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47193)	051-605-4405 (051-605-4419)
동래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47808)	051-550-4411 (550-4389)
남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48452)	051-607-4402 (051-607-4389)
북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46504)	051-309-4411 (051-309-4389)
사하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2(49328)	051-220-4404 (051-220-4389)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46274)	051-519-4412 (051-519-4389)
강서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46702)	051-970-4421 (051-970-4389)

연제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47605)	051-655-4412 (051-655-4389)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48305)	051-610-4405 (051-610-4409)
사상구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46985)	051-310-4404~5 (051-310-4389)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46077)	051-709-4412 (051-709-4389)
해운대구	환경위생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48095)	051-749-4411 (051-749-4389)

4

대구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대구광역시청	위생정책과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41911)	053-803-4111 (053-803-4959)
중구청	위생과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 1(41908)	053-661-2754 (053-661-2759)
동구청	위생과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41185)	053-662-2752 (053-662-2759)
서구청	위생과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41777)	053-663-2753 (053-663-2759)
남구청	위생과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42429)	053-664-2753 (053-664-2759)
북구보건소	위생과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49(41550)	053-665-2752 (053-665-2759)
수성구보건소	식품위생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13(42152)	053-666-2752 (053-666-2759)
달서구청	위생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42731)	053-667-2752 (053-667-2759)
달성군청	청소위생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42974)	053-668-2752 (053-282-7487)

5

인천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인천광역시	위생안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21554)	032-440-2794 (032-440-8658)
중구	위생환경과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22315)	032-760-7347 (032-760-6469)
동구	환경위생과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22556)	032-770-6521

			(032-770-6509)
미추홀구 보건소	위생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22169)	032-880-7438 (032-880-8734)
연수구	위생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번길(21967)	032-749-7972 (032-749-7959)
남동구 보건소	식품위생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21589)	032-453-2633 (032-453-2759)
부평구 보건소	위생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1(21359)	032-509-6822 (032-509-7670)
계양구	위생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21067)	032-450-5434 (032-551-5744)
서구	위생과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22726)	032-560-4322 (032-560-2756)
강화군	환경위생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23031)	032-930-3835 (032-930-3636)
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22193)	032-899-3162 (032-899-3129)

6

광주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광주광역시청	식품안전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61945)	062-613-4383 (062-613-4369)
동구청	보건위생과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61466)	062-608-2452 (062-608-2499)
서구청	보건위생과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61928)	062-360-7672 (062-360-7558)
남구청	보건위생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61687)	062-607-4442 (062-607-4405)
북구청	위생과 공중위생팀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61187)	062-410-6697 (062-510-1452)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62430)	062-960-8479 (062-960-8809)

7

대전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대전광역시청	식품안전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35242)	042-270-4892 (042-270-4869)
동구청	위생과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34691)	042-251-4655 (042-224-6163)

중구청	위생과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34939)	042-606-6512~3 (042-712-6499)
서구청	위생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35238)	042-288-3323~4 (042-288-5917)
유성구청	위생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34139)	042-611-2422 (042-611-2431)
대덕구청	청소위생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34443)	042-608-6963 (042-608-3835)

8

울산광역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울산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44675)	052-229-3541 (052-229-2829)
중구청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44475)	052-290-3735 (052-290-3709)
남구청	위생과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233(44701)	052-226-5722 (052-226-5262)
동구청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44021)	052-209-3572 (052-209-3549)
북구청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44248)	052-241-7784 (052-241-7769)
울주군청	위생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군청로 1(44959)	052-204-2214 (052-204-2219)

9

경기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6444)	031-8008-3689 (031-8008-3699)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16490)	031-228-2227 (031-228-2396)
수원시 장안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16295)	031-228-5328 (031-228-5595)
수원시 권선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16626)	031-228-6326 (031-228-6595)
수원시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16255)	031-228-7394 (031-228-7595)
수원시 영통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16545)	031-228-8923 (031-228-8849)
고양시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10460)	031-8075-3424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031-8075-4919)
고양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10497)	031-8075-5283 (031-8075-9824)
고양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10409)	031-8075-6285 (031-8075-9887)
고양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10226)	031-8075-7285 (031-8075-9949)
용인시청	위생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17019)	031-324-2231 (031-324-2139)
용인시 처인구청	공원환경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17049)	031-324-5304~5 (031-324-5349)
용인시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3층(16963)	031-324-6303 (031-324-6362)
용인시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3층(16835)	031-324-8303~4 (031-324-8419)
성남시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13437)	031-729-3105 (031-729-3109)
성남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13259)	031-729-5315 (031-729-5525)
성남시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13371)	031-729-6313 (031-729-6525)
부천시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14547)	032-625-4302 (032-625-4309)
안산시청	위생정책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15335)	031-481-3975 (031-481-3198)
화성시청	위생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18274)	031-369-3526 (031-369-1613)
화성시 동부출장소	산업위생과	경기도 화성시 병점3로 23(18401)	031-369-4168 (031-369-4907)
화성시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537(18478)	031-369-5627 (031-369-5652)
남양주시청	위생정책과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12232)	031-590-8860 (031-590-2339)
안양시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 128(14034)	031-8045-3324 (031-8045-6605)
안양시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로 158(14047)	031-8045-4316 (031-8045-6655)
평택시청	위생과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17901)	031-8024-3894 (031-8024-3858)
평택시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66(17730)	031-8024-6362 (031-8024-6329)
평택시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17816)	031-8024-8092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031-8024-8259)
의정부시청	위생과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11622)	031-828-2931 (031-828-2939)
파주시청	위생과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10932)	031-940-8531 (031-940-4439)
시흥시청	식생활정책과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14998)	031-310-2232 (031-310-2821)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10109)	031-980-2235 (031-980-2229)
광명시청	생활위생과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14234)	02-2680-5489 (02-2680-2623)
광주시청	식품위생과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12738)	031-760-4723 (031-760-1457)
군포시청	위생과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15829)	031-390-0851 (031-390-0259)
이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153번길 13(17353)	031-644-4044 (031-634-4000)
오산시청	농식품위생과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3층(18131)	031-8036-7643 (031-8036-8917)
하남시청	농식품위생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12951)	031-790-5323 (031-790-6319)
양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11498)	031-8082-5281 (0505-041-0699)
구리시청	민원봉사과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11954)	031-550-2232~3 (031-557-8282)
안성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기도 안성시 강변로 74번길 18(17596)	031-678-5732 (031-676-0032)
포천시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12(11143)	031-538.3682 (031-538-3685)
의왕시 보건소	청소위생과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34(16076)	031-345-2822 (031-345-3599)
여주시청	보건소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14(12628)	031-887-3619 (031-887-3610)
양평군청	지역경제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12554)	031-770-2231~4 (031-770-2835)
동두천시청	농업축산위생과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11317)	031-860-2233 (031-860-2667)
과천시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13806)	02-3677-2234 (02-2150-1514)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가평군청	허가민원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12417)	031-580-2408 (031-580-2239)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11017)	031-839-2232 (031-839-2670)

10 강원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강원도청	식품의약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4266)	033-249-2428 (033-249-4099)
춘천시청	보건소 식품의약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35, 춘천시보건소(24358)	033-250-4588 (033-256-4010)
원주시청	보건소 위생과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39, 원주시보건소(26417)	033-737-4046 (033-737-4827)
강릉시청	보건소 위생과	강원도 강릉시 남부로 17번길 38, 강릉시보건소(25604)	033-660-3021 (033-660-3025)
동해시청	체육위생과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25755)	033-530-2125 (033-530-2713)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실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21(26027)	033-550-3015 (033-550-2981)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24826)	033-639-2684 (033-639-2386)
삼척시청	보건소 보건정책과	강원도 삼척시 척주로 76, 삼척시보건소(25929)	033-570-3323 (033-570-4169)
홍천군청	관광과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25135)	033-430-2653 (033-430-2459)
횡성군청	보건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로 379(25234)	033-340-5694 (033-340-5608)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26235)	033-370-2312 (033-370-2228)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25374)	033-330-2335 (033-330-2334)
정선군청	보건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26127)	033-560-2010 (033-563-4000)
철원군청	보건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 16(24037)	033-450-4958

			(033-452-8426)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24125)	033-440-2843 (033-440-2590)
양구군청	환경위생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24522)	033-480-2801 (033-480-2243)
인제군청	보건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40번길 34(24633)	033-460-2246 (033-460-2275)
고성군청	보건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24736)	033-680-3953 (033-680-3549)
양양군청	보건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25031)	033-670-2509 (033-670-2558)

11

충청북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충북도청	식의약안전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28515)	043-220-3163 (043-220-3169)
청주시청	위생정책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28527)	043-201-1985 (043-201-1989)
충주시청	보건소 위생과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27339)	043-850-3492 (043-850-3408)
제천시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27188)	043-641-3186 (043-641-3039)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28937)	043-540-3273 (043-543-2595)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29032)	043-730-3424 (043-731-1986)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29140)	043-740-3793 (043-740-3759)
증평군청	환경과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27927)	043-835-3633 (043-835-3609)
진천군청	축산위생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27832)	043-539-3423 (043-537-0477)
괴산군청	환경위생과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격정로 90(28026)	043-830-3472 (043-834-3018)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27010)	043-871-3832 (043-871-1926)
단양군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53(27013)	043-420-3323 (043-420-3209)

12

충청남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충남도청	건강증진식품과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32255)	041-635-4331 (041-635-3063)
천안시청	식품안전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31162)	041-521-5444 (041-521-2359)
공주시청	보건과장	충남 공주시 의당로 23(32572)	041-840-8784 (041-854-4101)
보령시청	보건소 보건행정과	충남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234(33493)	041-930-6854 (041-930-5909)
아산시청	위생과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31512)	041-540-2813 (041-540-2456)
서산시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6로 6(32001)	041-661-6529 (041-661-6599)

논산시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충남 논산시 논산대로 382(32993)	041-746-8145 (041-746-8019)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32823)	042-840-2464 (042-840-2459)
당진시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충남 당진시 서부로 56(31777)	041-360-6133 (041-360-6139)
금산군청	허가처리과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32726)	041-750-4014 (041-750-6058)
부여군청	가족행복과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33168)	041-830-2528 (041-830-2529)
서천군청	민원봉사과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33638)	041-950-4079 (041-950-4545)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33323)	041-940-2182 (041-940-2510)
홍성군청	보건소 보건행정과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06(32236)	041-630-9015 (041-630-9860)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32435)	041-339-7484 (041-339-7459)
태안군청	안전총괄과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32144)	041-670-2760 (041-670-1521)

13 전라북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전라북도청	건강안전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54968)	063-280-4671 (063-280-2479)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54994)	063-281-2372 (063-281-2613)
전주시청	한옥마을지원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길 110(55042)	063-281-5192 (063-281-2623)
전주시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55051)	063-220-5197 (063-220-5447)
전주시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54937)	063-270-6325 (063-279-6909)
군산시청	위생행정과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54078)	063-454-3414 (063-454-4279)
익산시청	위생과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54622)	063-859-5451 (063-859-5083)
정읍시청	보건위생과	전북 정읍시 수성1로 61(56177)	063-539-6136 (063-539-6531)
남원시청	보건지원과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55766)	063-620-7933 (063-631-5931)
김제시청	보건위생과	전북 김제시 성산길 138(54385)	063-540-1381 (063-540-1385)

완주군청	먹거리정책과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55352)	063-290-2704 (063-290-2060)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55434)	063-430-2313 (063-430-2697)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55517)	063-320-2327 (063-320-2248)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55634)	063-350-2556 (063-350-2339)
임실군청	의료지원과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80(55927)	063-640-3163 (063-640-3317)
순창군청	민원과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56039)	063-650-1443 (043-650-1339)
고창군청	생태환경과	전북 고창군 모양성로 55(56428)	063-560-2888 (063-560-2869)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전북 부안군 당산로 91(56314)	063-580-4432 (063-580-4702)

14 전라남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전남도청	식품의약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58564)	061-286-5764 (061-286-4736)
목포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전남 목포시 원산로 45번길 5(58714)	061-270-8943 (061-270-3597)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	전남 여수시 시청서4길 47(59674)	061-659-4386 (061-659-5842)
순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전남 순천시 중앙로 232(57938)	061-749-6836 (061-749-4683)
순천시청	허가민원과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57956)	061-749-5839 (061-749-4656)
나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전남 나주시 풍물시장2길 57-32(58274)	061-339-2151 (061-339-2833)
광양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전남 광양시 인덕로 1100(57741)	061-797-3799 (061-797-4151)
담양군청	관광레저과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57339)	061-380-3157 (061-380-3579)
곡성군청	보건의료원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4(57542)	061-360-7592 (061-363-3000)
구례군청	문화관광과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57656)	061-780-2326 (061-780-2577)
고흥군청	종합민원과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59542)	061-830-5276 (061-830-5576)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59455)	061-850-5323 (061-850-8505)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화순군청	관광진흥과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현길 23(58112)	061-379-3493 (061-379-3540)
장흥군 보건소	위생계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9(59327)	061-860-0312 (061-860-0597)
강진군청	관광과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59228)	061-430-3195 (061-430-3319)
해남군청	문화관광과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59028)	061-530-5310 (061-530-5577)
영암군청	여성가족과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58415)	061-470-2796 (061-470-2796)
무안군 보건소	위생계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58532)	061-450-5019 (061-450-5134)
함평군청	윈스톱허가과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57149)	061-320-1642 (061-320-3838)
영광군청	스포츠산업과	전남 영광군 영광읍 월현로 170(57035)	061-350-5565 (061-350-5360)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57219)	061-390-7312 (061-390-7585)
완도군청	관광정책과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59124)	061-550-5442 (061-550-5409)
진도군청	관광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58915)	061-540-3413 (061-540-3448)
신안군 보건소	위생식품계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58827)	061-240-8437 (061-240-8892)

15 경상북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경상북도청	식품의약과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36759)	054-880-3840 (054-880-3849)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37683)	054-270-3575 (054-270-3090)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37832)	054-270-6186 (054-270-6513)
포항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37705)	054-240-7184 (054-240-7513)
경주시청	식품안전과	경북 경주시 양정로 260(38102)	054-779-8588 (054-760-7486)
김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북 김천시 시청길 1(39532)	054-421-2779 (054-420-6664)
안동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65(36694)	054-840-6622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054-840-5919)
구미시청	위생과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39281)	054-480-5542 (054-480-5499)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경북 영주시 시청로 1(36132)	054-639-6634 (054-639-6609)
영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북 영천시 옛군청1길 31(38849)	054-339-7998 (054-330-6439)
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경북 상주시 중앙로 111(37183)	054-537-5134 (054-534-4000)
문경시청	위생담당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36982)	054-550-6171 (054-550-6219)
경산시 보건소	식품의약과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8(38616)	053-810-6341 (053-811-7441)
군위군청	환경위생과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39013)	054-380-7327 (054-380-7309)
의성군청	유통축산과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37337)	054-830-6243 (054-830-6299)
청송군청	종합민원과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37427)	054-870-6173 (054-873-3000)
영양군청	종합민원과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36537)	054-680-6791 (054-680-6789)
영덕군청	환경위생과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36429)	054-734-6174 (054-730-6189)
청도군청	사회보장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38330)	054-370-2172 (054-370-6169)
고령군청	민원과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40138)	054-950-6693 (054-950-6149)
성주군청	경제교통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40022)	054-930-6724 (054-930-6709)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39888)	054-979-6675 (054-979-6679)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경북 예천군 충효로 111(36826)	054-650-8062 (054-650-6780)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36239)	054-679-6192 (054-679-6179)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36323)	054-789-6693 (054-789-3606)
울릉군청	환경산림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40222)	054-790-6173 (054-790-6189)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경남도청	식품의약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51154)	055-211-5013 (055-211-5019)
창원시청	환경위생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51435)	055-225-3604 (055-225-4722)
진주시청	위생과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52789)	055-749-8684 (055-749-5789)
통영시청	보건위생과	경남 통영시 안개4길 108(53038)	055-650-6033 (055-650-6199)
사천시청	환경위생과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52539)	055-831-3611 (055-831-6025)
김해시청	위생과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50924)	055-330-4468 (055-328-6239)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경남 김해시 부곡로 57(50990)	055-330-4903~4 (055-330-6819)
밀양시청	보건위생과	경남 밀양시 삼문중앙로 41(50437)	055-359-7091 (055-359-7095)
거제시청	위생과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53257)	055-639-3994 055-639-3983 (055-639-3979)
양산시청	위생과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50624)	055-392-5282 (055-392-5199)
양산시 웅상출장소	경제환경과	경남 양산시 진등길 40(50519)	055-392-6933 (055-392-6269)
함안군청	환경위생과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52043)	055-580-2585 (055-580-2409)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50317)	055-530-1164 (055-530-1610)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52943)	055-670-2735 (055-670-2199)
남해군 보건소	위생안전팀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52413)	055-860-8744 (055-860-8799)
합천군청	환경위생과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50231)	055-930-3318 (055-930-3299)

17

제주특별자치도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63122)	064-710-2943 (064-710-2919)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63208)	064-728-2614 (064-728-2619)
서귀포보건소	위생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52(63584)	064-760-6502 (064-760-2429)

18

세종특별자치시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세종특별자치시청	보건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30151)	044-300-5734 (044-300-5719)